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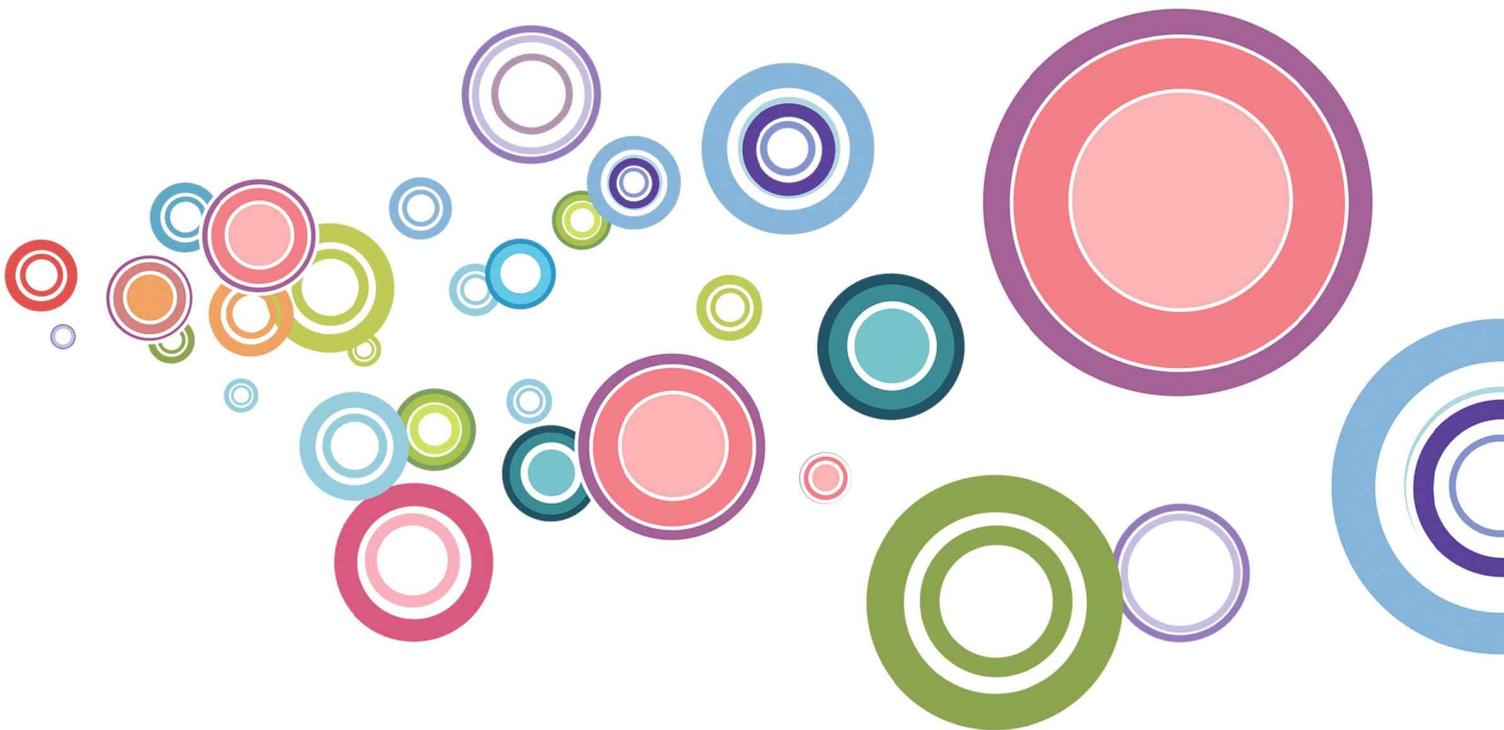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군산교육 2022-3

모든 아이를 위한
군산교육

2022학년도

군산 특수교육 운영 계획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JEOLLABUKDO GUNSAN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군산특수교육 운영계획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군산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2022년
군산특수교육 운영계획

목 차

I. 군산 특수교육 계획 수립 기반	5
II. 군산 특수교육 현황	9
III. 2022년 군산 특수교육 핵심과제	11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11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11
1-2.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3
1-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18
1-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21
1-5.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23
1-6. 장애학생 안전 강화	25
2. 통합교육 여건 조성	27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7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9
2-3.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30
2-4.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32
2-5. 각급 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34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36
4. 특수교육지원 지원체제 구축	41
4-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41
4-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강화	44
4-3. 장애 공감 문화 조성	46
4-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48
4-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체계 구축	51
4-6.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54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55
5-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	55
5-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57
5-3.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58
5-4.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	59
5-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	61
5-6.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64

I

군산 특수교육 계획 수립 기반

1. 전북교육 기본방향



2. 전라북도 특수교육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사회통합 실현

목표

- ✓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강화
-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추진과제

- 1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 2 통합교육환경 조성
- 3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3. 군산교육 기본 방향

군산
교육철학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

추진 방향

- 함께 꿈꾸고 참여하는 지역교육거버넌스 구축
- 마을과 학교, 삶과 배움이 어우러지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 자치와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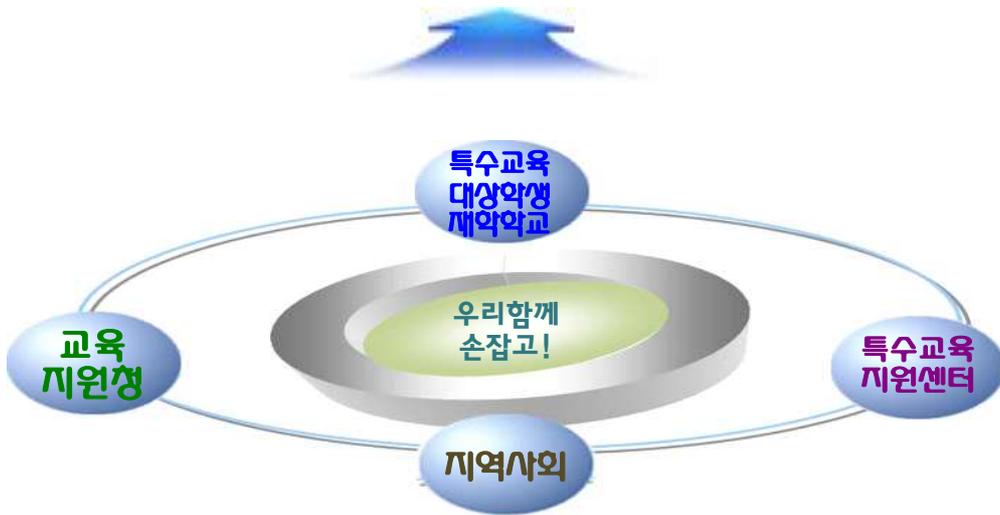


특색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군산미래교육지구

4. 군산 특수교육의 비전 및 목표

다양한 배움을 보장하는 행복 특수교육



목 표

-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
-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교육지원청

- 개별화교육강화
- 선정·배치 체계 확립
- 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인권우호적 분위기 조성
-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및 자료지원
- 진단·평가지원 및 정보관리
- 지역중심 관련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제공
- 장애인식개선·이해교육 제공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장애학생 직업탐색 기회증대
- 업체 실습 및 취업기회 확대
- 특수교사 전환교육 역량 강화
- 진로상담 및 관련정보 제공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II

군산 특수교육 현황

1.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2022.3.1.기준)

구분	발달지체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계
무소속 보육시설	2	2									4
유	25	9	2	12	2	1					51
초	27	147	3	29	10	13	3	3		4	239
중		66	3	6	1	4	1	3		4	88
고		51	1	1	6	2		1	1	1	64
총계	54	275	9	48	19	20	4	7	1	9	446

2. 특수학교 현황

순	학교명	학교수	학 급 수						비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1	군산명화학교(공립)	1	1	12	7	9	4	33	

3. 특수학급 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	학급	교	학급	교	학급	교	학급	교	학급
3	8	29	35	9	10	5	8	46	61

4. 군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현황

센터장 (교육지원과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 및 관리		계
		교사	강사	치료사	교사	주무관	특수행정 실무사	
1	1	6	2	1	4	2	1	18

5. 군산 특수교육기관 현황

순	기관명			주소	전화
1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조촌로 22(조촌동 757)	450-2830
2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450-2800~10
3	군산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450-2820~5
4	특수학교	공립	군산명화학교	상나운1길 37	462-2195
5	유치원 (3개교8학급)	공립	군산가람유치원(3학급)	궁포안4길 6	454-8008
6			군산중앙유치원(2학급)	중앙로 91	446-9711
7			군산도담유치원(3학급)	칠성1길 26	464-9215
8	초등학교 (29개교 35학급)	국립	군산부설초	팔마로 110	442-2188
9		공립	군산구암초(2학급)	경암동 3길 114	445-2405
10			군산금빛초	궁포3로 48	453-9009
11			군산나운초	신설로 50	465-8101
12			군산남초(2학급)	삼학7길 4	462-2521
13			군산동초(2학급)	번영로 239	452-3732
14			군산미성초	칠성2길 27	464-7545
15			군산산북초(2학급)	산북동 원산북 2길 70	465-2414
16			군산서초	중앙로 536	445-3664
17			군산신흥초	백토로 129	467-2272
18			군산아리울초	수송동 830-2	440-8880
19			군산월명초	청소년회관로 51	462-9247
20			군산중앙초	중앙로 179	445-1735
21			군산초	중앙로 170	442-6578
22			군산풍문초	풍문 1길 32	445-2575
23			군산흥남초	문화동 9길 18	466-0018
24			군산문화초(2학급)	문화안길 51	465-0908
25			나포초	나포면 옥곶리 261	453-1006
26			당북초(2학급)	백석로 42	462-8983
27			문창초	공항로 520	466-3008
28			미룡초	대학로 498-10	467-6846
29			새만금초	요죽5길 42	469-7611
30			소룡초	소룡초교 2길 77	468-9103
31			옥구초	옥구로 50	464-9596
32			옥봉초	옥봉초교길 145	471-2005
33			옥산초	옥산면 여로 2길 40	464-4015
34			해성초	산북동 옥성남길 21번	466-2775
35			회현초	회현면 회현로 139	466-5054
36			군산푸른솔초	축동로 20	460-1706
37	중학교 (9개교10학급)	공립	군산산북중	동아로 109	468-0222~3
38			군산서흥중(2학급)	흥남로 118	462-0091
39			군산월명중	설림5길 90	462-3334
40			군산자양중	우치산3길 40	464-9372
41			군산중	군중길 18	465-5925
42			군산진포중	진포3길 66번지	462-3206
43			나포중	나포면 등동1길 6-5	453-1744
44			회현중	회현면 대위로 426	466-5147
45			옥구중	대야면 지경리 만자로 92	451-2946
46	고등학교 (5개교8학급)	공립	군산고(2학급)	팔마로 122번지	445-4255
47			한들고	대야면 만자로 60	451-2915
48			군산상고(2학급)	석치1길 5	468-8676
49			군산여고	월명1길 16	440-1100
50			군산여상(2학급)	중바우2길 33	467-6506

Ⅲ

2022 군산 특수교육 핵심과제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장애 특성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권 보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정과제 51-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추진

-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학급당 정원 수 준수 추진

[전라북도 특수학급 자체 정원 기준]

연도	유	초	중	고	전공과
2022	4	6	6	7	9

- 수요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일반학교 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문제 및 과밀학급 해소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거주지 인근에 배치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노력 지속

- 2022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
 - 군산가람유치원(3학급 신설), 군산금빛초(1학급 신설), 군산산북초(1학급 증설)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 1명의 특수학급 운영 지양
 - 학생 수 1명 특수학급 소속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자체 점검
-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추진 일정
 - 2023학년도 수용계획 수립(11월) 이전에 실시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일 경우 유아입학시스템(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등록 이전 실시
- ※ 유치원 유아모집 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우선 모집 대상임

[특수학급 편성 요건]

- 적용대상: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 신·증설 기준

구 분	기 준
신설	특수교육 학생 수가 3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유지 가능 학교
증설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증설 후 3년 이상 유지 가능 학교

- 편성 요건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제외
 -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실 확보가 우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지정·배치 등
 - 시·군을 달리한 학교 배치는 지양(필요할 경우, 등본 등 거주지 확인 서류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배치는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운영할 학교 중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2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추진내용

가.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반학교의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편성·운영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에 특수교육 운영계획 포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지양: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 노력
- 학년 초 통합학급 적응 기간은 학교 상황과 학생 장애 특성에 맞게 자율적 운영
 - ※ 예시) 특수교사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장애인식개선 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 통합학급교사와 공유, 통학학급 교육지원 방안 협의, 상담 등

나. 특수학급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자율선택과제 운영)

- 목적
 - 특수학급 학생들의 일상생활, 사회적응, 직업훈련 프로그램 활동
 - 특수학급 학생들의 정서지원 및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선정(4월 중)

- 지원규모 : 일반학교 특수학급(50개학급, 급당 1,500천원 기준, 75,000천원)
특수학교(10개교, 교당, 6,000천원 기준, 60,000천원)

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위기 상황 시 학습권 보호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서적 위기로 인한 유예 및 면제 지양
- 정서 문제(우울감, 감정조절 능력 저하, 공격적 행동 등)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 급증으로 인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 2022 장애학생 위기대응 관련 매뉴얼 제작 자료 참고
-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또는 심리안정실 운영 활성화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교사와의 협력 강화
- 통합학급 교수·학습 수업 방법(협력 교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

라.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지원계획 포함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통합학급 수업 참여 범위 결정
- 일반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통합학급 교수·학습 활동 참여
- 통합학급 교수·학습 수업 방법(협력 교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
- 통합교육지원단을 통한 지원

마. 통합학급 교사의 책무성 강화

-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배치기준 준수 및 연수 이수 철저
 - 통합학급 담임교사 배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원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중인 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 통합학급 교사 대상으로 특수교육 이해 연수

바.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 통합학급 운영 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 정원 1~3명 감축 필요

사.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증진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단(국립특수교육원) 운영
 -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안내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급) 우수 사례 발굴·확산 및 공유
-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반영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교수·학습자료 활용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 보급 확대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아. 장애학생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구분		작성 방법
통합학급에서 교과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는 교과		○ 교과담당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함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교과 편성 시간을 나누어 참여하는 교과		○ 교과담당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 시 특수학급 참여 시간의 교육활동 및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음
특수학급에서 교과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는 교과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 내용이 있을 경우	○ 교과담당교사는 특수교사에게 교과의 지도계획 및 평가 계획을 제공하고,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교육내용 및 평가내용을 교과담당교사와 공유함 ○ 교과담당교사는 공유 내용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작성이 어려울 경우	○ 장애가 심하여 교과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특수학급에서 생활기능 중심의 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가능한 태도, 노력, 성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되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장애학생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절차(p10)'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교과세부능력 특이사항을 기록할 수 있음 예시) 개별교육에 따라 특이사항 없음

※ 참고 : 교육부(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 자료)

자. 삶을 가꾸는 생활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생활중심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안에 환경교육 편성 및 운영
 - 지역별 특화된 환경교육 계획 및 실행
 -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환경 위기 대처 교육
- 사회참여 교육활동 프로그램 추진
 -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이상 학생에 대한 선거 참여 방법 및 바람직한 사회참여 활동 교육 계획 및 운영
 - 민주시민 교육 지원을 위한 참여와 실천 중심 교육활동 운영

□ 협조 및 유의사항

- 신규-경력 특수학급 교사 간 특수교육 컨설팅 활성화 노력
 - 해당 지역에서 신규-경력 특수학급 교사 간 멘토-멘티 운영
 - 특수교육지원단과 행복동행 적극 활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입(진)학 설명회 개최
 - 시기 : 2022. 6 ~ 7월 중
 - 대상 : 관내 취(진)학 예정인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 ※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실행
 - ※ 다음년도 취학 진학을 위한 신규 선정·배치 시 특수교육관련서비스는 다음년도 부터 지원함을 미리 안내할 것
- 모든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 자제, 탄소 연료 사용 감축 노력

1-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운영의 내실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추진내용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 참여(의무)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 준수
 - 개별화교육지원 관련 부모교육 기회 제공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포함
 - ※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시,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
-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 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지원 강화

-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특수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지무원 등) 활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전문가와의 연계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망 구축 지원

□ 협조 및 유의사항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연수
-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대상의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에 관한 연수 내용 포함
- 관련자료 참고 안내
 -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 북(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계획 예시 자료 ■

※ 본 예시는 개별화교육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로 각 학교 상황에 맞게 개별화지원팀 협의에 따라 구성

[1학기 개별화교육계획]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및 개별화교육시작 및 종결 시기

이름		개별화교육지원팀	○학기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팀장(관리자)	
학년반	학년 반	팀원(보호자)	
장애 유형(등급)		팀원(진로 담당)	
배치 결과통지서 번호		팀원(일반교사)	
주소		팀원(특수업무)	
		팀원(관련서비스)	
배치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학급 배치 <input type="checkbox"/> 특수학급 배치		
○학기 개별화교육 시작 및 종결 시기	○학기	20○○.3.1 ~ 20○○.08.○○.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구분	○학기
치료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3. 현재 학습 수행 수준

현재학습 수행수준	내	용

4.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계획

영역	○학기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 방법	
평가계획	

1-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촉진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력 향상
-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동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동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 강화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이행 철저
 -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 유치원 학급 설치나 특수교사 배치
 -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유치원 입학 희망 시 법적인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우선 입학
 - ※ 2022년 유치원 입학 유아는 처음학교로 입학 시스템 실행 이전 선정·배치 완료
- 특수교육대상 장애 영아 교육 지원
 - 장애영아학급 운영: 전주유화학교 1학급
 -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통한 지원 강화
 - 장애영아의 조기발견과 교육 기회 확대 노력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 2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 가능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383, 2020.8.24.)
- 순회교육 지원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 선정 시 필요한 교육지원 및 관련서비스 결정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월 381천원 한도 실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취학유예 및 면제 기준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반드시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대면심의 실시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장애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담당자 연수

-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유치원/센터) 연수 실행: 연 3회

-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 부모 상담, 초등학교 방문 체험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전이 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 참고 자료: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길라잡이(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제작 보급)

전북교육청(www.jbe.go.kr)-전라북도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실 탑재

□ 협조 및 유의사항

-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의무교육 이행 안내

- 부모 상담을 통해 취학유예 및 면제 관련 정확한 안내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발달 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

1-5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추진내용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참여 권장
-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등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 현장학습 등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전라북도 내 장애 예술인(학생, 일반인) 발굴 노력
 - 「작은 음악회」 운영을 통한 거점기관 및 도내 장애 예술인의 발표 기회 제공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e-스포츠 운영 확대 지원
 - 장애학생 e-스포츠·정보화 교사연구회 운영
 - 장애학생 e-스포츠 운영(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 찾아가는 생활체육 순회 서비스 지원

- 민간보조사업(1기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으로 운영

다. 전북 IT-페스티벌 대회 운영 활성화

- 특수학교(급) 특성에 맞는 접근 가능한 종목 선정 운영
- 지역별 대회, 온라인 대회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학교(급)

- 전북 IT-페스티벌 대회 적극 참여

■ 전북 IT-페스티벌 대회 운영 적극 참여

1-6 장애학생 안전 강화

□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 추진내용

■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 교육 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운영, 장애학생의 자기 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 특수학교(급) 재난 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행

- 현장 실태를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안전교육 수시 실행
 - ※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 유형 및 정도, 주변 환경 등이 고려된 위험 요소 등
 - ※ 「119 다매체신고 서비스」 활용 방법 교육 등 현장성 높은 교육 필요
- 재난 발생 시 장애 유형별 위험 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 점검의 실행·결과 보고 등)에 따라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행

■ 학교별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코로나19 대응 안전교육 실행: 마스크 착용 교육,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안내, 출입자 명단 관리, 교내 시설물 환기와 정기적 소독 실행,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

■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과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점검

■ 학교 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악취, 소음, 먼지 등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 협조 및 유의사항

■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담당 경찰서, 소방서 간 협의체 운영

■ 「학교 안전교육 실행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애학생 학년별 안전교육(교육 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행 결과 보고

■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철저

■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및 수업환경 개선 추진

2

통합교육 여건 조성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실행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추진내용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대학생 교육봉사활동 연계 통합학급 학생 지원 추진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통합학급 프로그램 지원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특수교사,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 「**찾아가는 통합교육 지원 담임제**」 운영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나.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 통합교육 지원 여건 조성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6개 기관)**
- 유치원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65학급 예정)
- 유치원특수학급 중증장애 유아 배치 시 특수교육보조인력 우선 배치
- 신.증설 유치원 특수학급 컨설팅과 교재.교구 지원 강화

■ 특수·통합학급 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유아 정보공유, 협력 교수 등 협업 강화
-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2017)’,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 2017)’,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국립특수교육원, 2018)’ 적극 활용,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 사례집(전북교육청, 2021.)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유아 정원 내 배치로 통합교육 환경 여건 개선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에 필요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지원

■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역할(예시)

- 지원단 구성: 지역 내 인력풀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 대학교수, 경력 특수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지원전문가, 학부모 등
- 역할: 통합교육관련 컨설팅, 상담, 특수교육 교원 연수, 통합교육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자료 개발 등
-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진단·평가 기능,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학습·정보지원 기능과 연계 운영 가능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 추진내용

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교장, 원장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일반학교 교장, 원장은 매년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실행

※ 2022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교장, 원장과 교사 대상 연수 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나. 통합학급 교사 지원 강화

-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집합 연수 및 원격연수 실행

- 자체 연수 및 위탁 연수(국립특수교육원) 실행
- 전북교육연수원 주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과정 운영(2월)

※ 30시간 연수 과정 2개(단 2개의 연수 내용이 같은 경우는 제외)

□ 협조 및 유의사항

- 일반학교 교장, 원장 대상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안내

-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및 학년 초 장애이해 관련 연수 실행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 교육연수 과정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2-3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순회교육 지원 대상(특수교육법 제25조)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영유아 중

■ 운영 방법

- 일반학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지원
- 교육지원
 -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능력·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
 -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은 이동 거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판단으로 최대한 지원

나.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

- 순회교육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재구성, 가족 지원 방법 등 연수 운영
- 일반학교 순회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선정
 - 통학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출석 권장
-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실행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학교(급)
 -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순회교육 담당교사와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상황을 수시 확인

2-4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추진목적 및 근거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2조(개별화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 공학적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활용
- 무장애통합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2019~2021년, 36개교 지원)

나.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방안 마련

다. [신규]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전주예수병원) 내 특수학급 설치를 통해 치료와 교육활동 병행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2022.7월 개원(예정)으로 2023학년도 특수학급 신설(2학급)과 지원인력 배치 협의

■ 특수학교(급) 중도중복학생 교육 및 의료적 지원(43,000천원)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 제공
-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로 지원방안 협의 및 반영

※ 참고자료-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사업 가이드북」, 교육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1.

라.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

-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한 연수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학교(급)

- 단위학교는 교과교육 외에 의학적 상담, 치료지원, 가족 지원, 지원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심리·물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 점검 실행

2-5 각급 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각급 학교의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 교육 기반 구축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추진내용

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 도내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예산 확보
 - 장애인편의시설(재배정 사업) 확충을 위한 연차적 재원확보 노력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기관 확대에 따른 홍보 확대, 예산확보 및 이행 철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의무기관 및 내용
 - ※ (벌칙조항) 같은법 제49조: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링 실행

-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2021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 전복 96.4%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및 설치 점검 강화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자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이행 지속적 모니터링 실행

[2021년 장애인 학교 급별 편의시설 설치율]

[2021. 12. 31.기준]

연도별 설치율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안내시설			설치율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2019 년도	학교 수	1,268	1,207	1,244	1,168	1,182	1,148	1,165	1,138	1,149	736	754	743	95.0
	비율 (%)		95.2	98.1	92.1	93.2	90.5	91.9	89.7	90.6	96.0	98.3	96.9	
2020 년도	학교 수	1,268	1,222	1,218	1,177	1,212	1,238	1,179	1,180	1,142	725	725	708	95.6
	비율 (%)		97.1	97.4	95.3	97.0	98.3	95.0	95.7	93.3	95.0	95.2	94.0	
2021 년도	학교 수	1,259	1,252	1,238	1,219	1,231	1,250	1,214	1,180	1,145	733	749	734	96.4
	비율 (%)		99.4	98.3	96.8	97.8	99.3	96.4	93.7	90.9	95.1	97.1	95.2	

※ 202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북 96.4%('19년 95.0% ⇒ '20년 95.6% ⇒ '21년 96.4%)

※ 2021. 3. 1. 폐교·휴교(초등학교, 유치원), 분교장(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미달) 제외

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노력

- 단위학교: 3개 의무 항목(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자체 예산 적극 확보
- 전북교육청: 승강기 12교, 무대경사로 56교, 기타 편의시설 92교 지원

□ 협조 및 유의사항

- 자체예산으로 설치토록 한 의무시설(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예산 확보
 - 교장, 원장 연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교육 강화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학생 미래생활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역량 등) 강화

● 개인의 진로희망에 따른 사회참여기회(진학, 취업 등) 확대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 활용
- 자유학년제 운영을 통한 진로인식 및 탐색 기능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 활성화(1개교)
- 직업교육 거점학교(특수학급) 운영: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실행(3개교)
- 특수학교(급) 교사 진로직업동아리 운영(10팀)

■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관리

- 장애학생 직업·흥미검사도구(국립특수교육원),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평가기관과 연계한 직업평가 체계 구축·활용을 통해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발굴

- 개인별 진로·직업교육 결과·이력의 체계적 관리와 졸업이후 취업지원 시스템과 연계 강화[교육부(진로직업교육 이력, 요구 등을 작성하여 서비스 의뢰)-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서비스 분류,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한국장애인개발원(취업 전 서비스(보호고용, 직업훈련))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 (취업률 제고) 고등학교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직업실기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및 비용 지원(100명, 1인 300천원)

나.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활성화

-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협력 운영(2022년 3월 활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졸업 후 장애학생의 일자리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 교육과정 내에서 안정적인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교과 Ⅲ ‘직업현장실습’ 과목 적극 활용 권장

■ 산업체, 장애맞춤 훈련기관*과 학교 등이 협력하여 장애학생 현장적응 역량 강화,

- 직업 경험 확대를 위해 직무 체험 중심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과정 운영

*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등

■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보호 및 특수교육(진로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방식 전환

■ 관계부처(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업무협약(2018.8월)을 통한 교사 2명 지원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사업*(취업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현장실습 참여 기간 3주 이상, 학교에서 산업체로 직접 현장실습 참여하는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우수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행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허용(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
- *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 확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 선정한 산업체 등
- 정부(지자체) 및 장애학생 전문 취업지원 관계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허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직업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으로 다양한 현장실습처 발굴(MOU 체결)

라.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와 취업 지원 강화

■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 중증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 * 지역사회 내 일자리 수요가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 장애인 취업을 목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직업재활 전문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추진(2개 수행기관, 12명)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지자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위탁교육 확대
- * 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설계컨설팅,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산업체 단기견학, 체험, 일 배움 프로그램 등 운영

- 교육기관 내 일자리사업: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40명, 연 2회), 특수행정실무사 65명
- 장애학생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운영(10기관)
- 전북교육청 단위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에서 일자리 유형과 직업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하되, 일부 학생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선발·운영

마.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전주, 군산, 익산)
 -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학부모 대상 자녀의 진로·취업 등 미래 진로 설계를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
 - * 국립특수교육원의 부모지원 온라인 종합시스템 ‘온맘’, 학부모용 ‘진로레터’ 적극 활용

바.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운영 지원

-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 촉진 및 진학 후 안정적 적응 능력 향상 지원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30명
- 진로드림 페스티벌을 통해 진로체험 및 진로직업 기량 발휘 지원
 - 2022.10월중, 울산광역시교육청(발달장애 영역)

□ 협조 및 유의사항

-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22.2~4월)
- 성과지표를 활용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권장 및 결과(전공과 설치 학교. ‘22.11월)
- 진로직업교육 교사 동아리 선정·운영(‘22.4월~)
- 성과지표를 활용한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결과 제출(‘22.11월)

■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현황 제출('22.11월)

■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및 점검 철저

-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안내('22.3.~4월), 운영 컨설팅 구성('22.1.~4월 중)
- 현장실습 운영 점검 실행(상반기: '22.5~6월, 하반기: '22.10~11월)
- 현장실습 운영 점검 결과 제출('22.12월)

참고 [현장실습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현장실습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 (현장실습 산업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차별금지,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폭력(성폭력 등) 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교육자료: 국립특수교육원) ▲('18) 산업체 현장실습을 위한 인권교육' 리플릿 ▲('20)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자료 ▲('20) 직업현장실습 콘텐츠 ▲('21) 직업과 자립 콘텐츠 ▲('21) 산업체 현장실습을 위한 인권교육' 리플릿 적극 활용 ▶ (교원·지원인력)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수 또는 교육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협의회 등에 인권보호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관계기관 직무지도원 교육에도 인권보호관련 내용을 넣어 교육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학교에 안내 ※ (교육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연수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학생노동인권 보호 관련 교육자료 및 콘텐츠 활용
현장실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도강화) 교원의 실습 현장 지도를 강화(관계기관과 연계 등) 인권 침해 사전 예방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관계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장실습 지원 및 컨설팅 강화
현장실습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보고회(평가회) 개최) 학생만족도, 권익침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시 인권보호체계 확립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4-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2021년 지역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정교사로 배치함(교사 87명)
- 전주, 군산, 익산에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배치(3명)



※ 2022. 교육부특수교육운영계획에서 발췌함

나.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체계

■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직 위	업 무	비고
교육지원과장	센터장, 운영 총괄	
담당 장학사	부센터장, 특수교육지원센터 기획·운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통계, 특수교육정책 관련, 민원 등	
특수교사	순회교육, 진단평가 등 각 업무별 운영	
주무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출관련 업무 등	
운영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특수행정실무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원	

- 교육지원청은 센터장(교육지원과장)을 중심으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담 인력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전반적 운영 관리와 특수교원의 순회교육 및 전담 인력의 복무 등을 관리함

다.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추진 계획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체계 확립

- 특수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사회 변화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의 확대 및 특수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상담, 장애 영·유아교육, 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직업교육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하여 특수교육지원의 전문성, 다양화를 도모하는 **특수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특수교육지원센터 독립성 확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 별도 운영 조직과 독립된 공간 확보 필요(특수교육원 설립 등)
-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예,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진단·평가업무) 특수교육지원센터 **고유의 업무 수행 강화**

[교육지원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구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주요업무 계획 수립.추진 - 특수교육 컨설팅 관련 업무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선정·배치) - 특수교육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등 각종 통계 - 계약제 교원 등 인력채용 관련 - 기타 특수교육 행정 지원 등 (재정교부, 인건비 등) - 관련서비스 행정 업무 (지원인력 관리 및 배치, 치료지원, 방과후, 통학비 지원 업무 등 행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진단.평가 및 선별검사 지원 - 순회교육 운영 - 특수학급 교수·학습활동지원 - 통합학급 교사 연수 등 통합교육 지원 -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운영 - 관련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치료 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족지원 운영 등) - 기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사항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 개선 지속적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및 협력 운영체계 구축

-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협력 운영체계 구축
 - 상호간의 업무 지원 및 사안 공동 대처를 통한 지원센터 안정화 도모
 - 군지역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협력운영체계 구축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3개소: 전주, 군산, 익산)
 - 일반학교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운영
 - 권역별 지원체계 유지 및 역할 변경

진로직업거점 권역	거점 역할
① 전주권역: 임실, 장수, 순창, 남원 ② 군산권역: 김제, 부안, 정읍, 고창 ③ 익산권역: 완주, 진안, 무주	① 진로직업 직무분석 등 운영 사례 공유 ② 진로직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안내

- 역할 : 진로직업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안내와 교사 대상 컨설팅 연수를 중
심 운영

4-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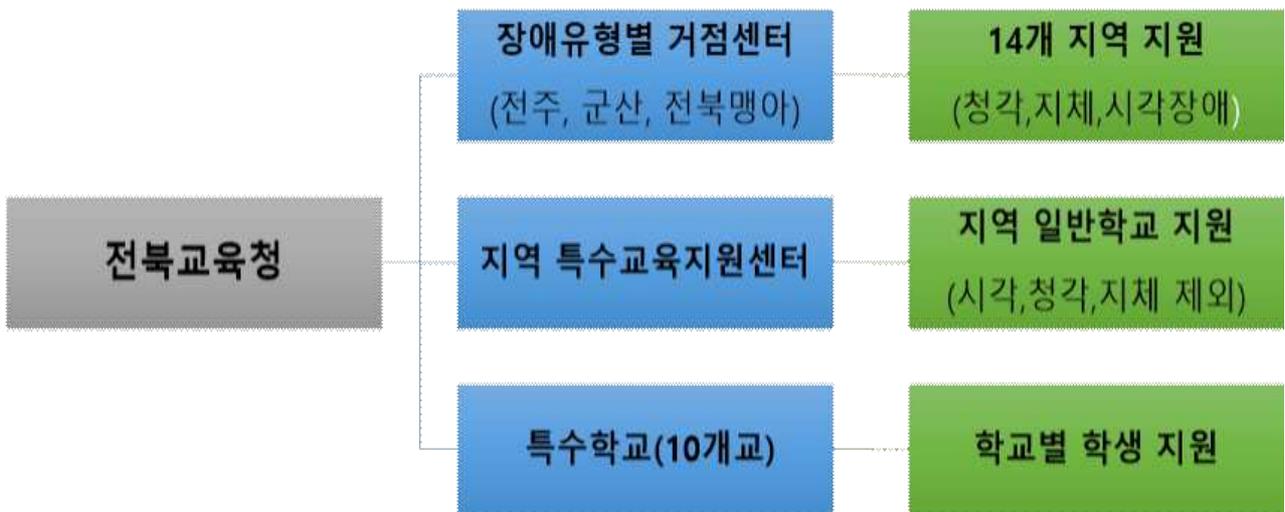
□ 추진목적 및 근거

● 각급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 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 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추진내용

[전라북도교육청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 일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대여

- 시각장애학생 대체 교과서(확대·점자·음성 교과서) 보급 지원(15,000천원)
- 장애 유형별 거점센터를 통한 시각, 청각, 지체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대여

- 지원 범위 및 영역: 4개 영역, 14개 시 군 대상(45,100천원)

센터명	설치 장소	비고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지체장애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아학교	시각장애

-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대여
-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유지 관리비 지원
- 지역별 수요에 따른 구입 및 대여 지원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학교(급)

- ①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지원
- ② 보조공학기기 대여 후 사용점검 및 관리 철저

4-3 장애 공감 문화 조성

□ 추진목적 및 근거

●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추진내용

가. 학생 대상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의 날’ 특별 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수업 실시 확대

- 유치원: 장애이해 동영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누리집·유튜브 탑재
- 초등: (KBS라디오) [대한민국 1교시],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 중등: (KBS TV) 장애이해드라마,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반영한 유·초·중·고등학교 연간교육계획 수립 추진
-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회 프로그램 참여, 장애체험활동, 교내·외 전문강사 강의, 장애이해 문화·예술행사 참여 등

나.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및 기관 전직원
-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원격교육
- 이수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대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및 기관 전직원
 -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원격교육
 - 이수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대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및 기관 근무자 중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원격교육
 - 이수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 사립학교와 취합기관(전북교육청)은 관련자료 3년 보관
-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계획 수립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실시(14개 교육지원청)
- 장애 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추진
 - 특수학교별로 창의적인 장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학교와 공동 활동함으로써 모든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 도모
 - 지역별 복지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실행
- 각급 학교·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행(「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일정 포함
 - 전문 강사(장애인 당사자 포함), 교육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행

다.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유·초·중등 학생과 일반인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홍보 콘텐츠 활용
- 장애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콘텐츠 활용 방안 마련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학교(급)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철저
- 학생 대상 연 2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행
- 교직원 대상 연 1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행

4-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과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자기 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 추진내용

가. 장애학생 인권 보호 종합대책 내실화 추진

- 인권종합대책 추진내용 점검(연 1회, 10월 중)

핵심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 부 추 진 계 획
I.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input type="checkbox"/> 장애학생 인권침해 감지체계 구축	- 온라인 인권 보호 지원센터 적극 활용 - 특수학교 내 신고함 설치 운영
	<input type="checkbox"/>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조사(연 1회)
	<input type="checkbox"/>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 - 특수학교 긍정적행동지원 팀 운영 -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II.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 강화	- 피해학생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특별현장지원 철저(더봄학생 선정 및 지원) - 인권보호자원 지도시스템 활용
	<input type="checkbox"/>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 정기현장지원(특수학교 연 2회, 특수교육대상배치교 연 1회) - 더봄학생지원방법 연수 실행 등을 통한 강화 - 전담인력 연수와 모니터링회의 실행
III. 인권보호 여건개선	<input type="checkbox"/> 장애학생 담당 인력 확충	-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노력(2교 2명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배치 확대(87명) -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지무원 확대 노력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특수학급 신·증설(22년 18학급) - 특수학급 법정 정원 준수

핵심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 부 추 진 계 획
		- 교육 소외지역 중고전공과 과정 특수학교 설립 노력 -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 교사 발생 예방 철저 -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교)급 교실 환경 개선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 인권지원단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강화
IV. 인권보호 역량강화	<input type="checkbox"/> 학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 교장(감), 원장(감), 교사, 학생 장애인권관련 연수 - 특수학교 교장 연 5시간 인권 관련 연수 이수
	<input type="checkbox"/>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와 관리 및 교육 강화	- 사회복지요원 연수, 점검을 통한 관리 철저 - 사회복지요원 16시간 직무교육(교육청), 장애이해 및 인권 연 2회(학교) 실행
V. 사회적 예방체제 구축	<input type="checkbox"/> 통합교육 지향 생태계 조성	- 정다운학교 확대 운영(8개교) -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거점센터 운영(3개센터) -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100개 학급) -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연중)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장애이해교육 운영 -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칙 신설 노력 (연수, 컨설팅, 현장 지원)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 모든 교육기관 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 장애인식개선 홍보 다양화(홈페이지, 전광판 활용)
	<input type="checkbox"/>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 점검단 운영	- 연 1회 교육부 주관 실행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 장애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22년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 참고)

- 인권지원단 구성: 3월 초(필수인원 포함하여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
- 협의회 개최: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
- 현장 지원: 매월 최소 1회 이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현장 직접 방문 점검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행
- 지원내용: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지원과 연수, 더복학생 선장·지원,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
- 결과 보고: 현장 지원 결과를 매월 30일까지 전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취합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보고)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진술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행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기 보호 역량 강화
-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 특수교사의 성교육 및 장애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행

■ 장애학생 성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보건교사)의 협업체계 구축

■ 방과 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담당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 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자료 활용

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연 1회)

-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침해 실태조사 협조위원 1명씩 선정지원

라.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강화

■ 장애학생 행동중재 연수 운영

- 교사 직무연수 운영: 2022.4월 중 연수대상자 선정, 8월중 연수 운영 예정
- 기관별(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 장애학생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1개소,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 행동중재 전문가단 운영을 통한 지원
- 일반학급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컨설팅 및 운영 지원
- 장애학생 행동중재 연구회 운영(2개팀)
- 교사, 보호자, 대상연수
- 심리적 소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부적절한 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 중재 실행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학교(급)

-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발생 인지 시 즉시 신고 및 보고(수사기관, 교육청)
-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 특수교사의 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행 및 참여

4-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체계 구축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초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병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15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전북교육청 1, 지역교육청 14) 운영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점검, 영역에 맞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담당 간사는 특수교육담당장학사로 함**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길라잡이 참고(전북교육청)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의무·무상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지원 절차 안내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홍보 강화

- 지역 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 병·의원,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진단·평가 계획 수립
 - 진단·평가팀 구성
 - 진단·평가 팀장은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로 함
 - 팀원은 특수교사, 치료전문가 등 장애 영역별 진단평가 전문가로 구성함
 - 사전연수: 진단·평가의 시행 방법, 결과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한 연수 실행
 - 검사도구 및 관련 서류 정비
 - ※ 진단·평가 결과 처리 시 치료지원 영역 표기 여부 확인
 - ※ 기타 세부 사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업무 길라잡이 참고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시 유의사항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재배치(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학습 부진 학생이 학습장애학생으로 선정·배치되지 않도록 지침 준수

라. 취학 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취학 의무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만3~5세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
- 과 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국가인권위원회 원고(2015. 8. 19.)
 -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지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지난 자에 대해 반드시 특수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등 안내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취소
 - 선정취소가 결정되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단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종 편의 제공 철저
 - ※ 기타 세부 사항은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참고

4-6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 추진목적 및 근거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특수교육 기반 조성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추진내용

가.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협력체제 구축

- 학부모 마을 교사 활성화(방과 후 마을 학교,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등)
- 지역별 장애인권 및 이해 교육 학부모 강사단 인력풀 지원
-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체제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과 협력 장애학생 취업 서비스 강화
 - 지역 관계기관 등과 연계한 진로직업 직무실습 체험과 취업 프로그램 운영

나. 가족 지원 강화

- 학부모의 성장과 건강한 학교 참여를 통한 소통 지원
 - 지역별 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회, 진로 및 진학설명회, 다양한 특수교육지원 교육 실행
 - 학부모 성장을 위한 교육 운영과 지원
- 학부모의 주체적 학교 참여 보장
 - 개별화교육지원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통한 참여
 - 지역별 학부모회와 동아리 활성화(14개 교육지원청별 운영지원)
 - 가족 단위 교육지원 적극 권장: 방학 중 프로그램, 가족 캠프, 가족합창단 등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5-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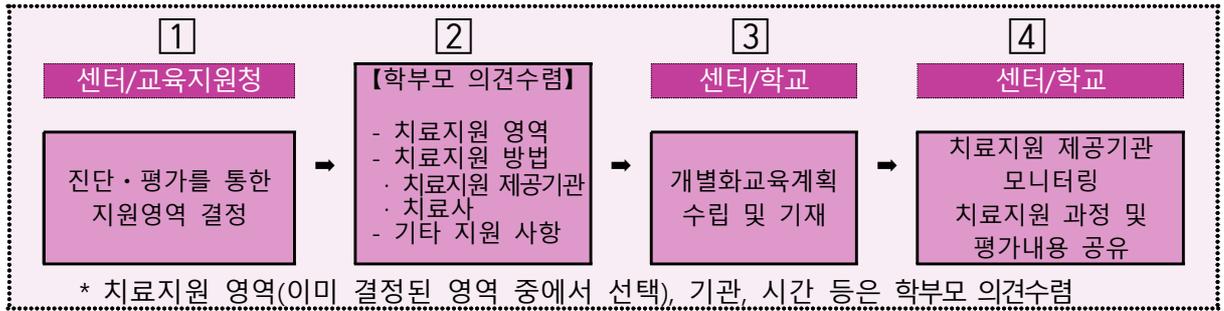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 적응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장애의 조기발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추진내용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필요 학생
 -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는 지원 불가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 불가
- 치료지원 영역 및 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음악, 미술, 심리운동, 감각통합)
 - 의사의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방법
 -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 2022년 2명 운영
(※ 군산, 김제지역 운영 중, 한시 운영사업으로 추후 종료 예정임)
 - ☞ 위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운영시간은 방과 후 시간을 원칙으로 함
 -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용(비영리기관일 경우 가능함)
 - 치료지원 관계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 치료지원 제공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교육지원 의견 제시(치료지원 포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시한 교육지원 영역 안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



■ 치료지원 전자카드 「꿈 활짝 카드」 사용 안내 (<http://jbe.nhdream.co.kr/>)

- ① 카드 신청 및 (재) 발급
 - 담당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는 해당 학교)
- ② 이용 방법
 - 매월 1일 지원액이 포인트로 생성
 - 매월 말일 월 잔여 포인트 자동 소멸
- ③ 이용장소
 -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드림스 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대상 가맹점 조회 가능)



□ 협조 및 유의사항

■ 치료지원 대상학생 지원 지침 숙지

- 중복 지원 및 과다 지원 방지 철저
- 치료지원 지침 숙지를 통한 민원 발생 억제 노력

■ 치료지원 전자카드 사용 내용 정비(연 2회, 3월, 9월)

■ 미인증 사설 치료기관에 치료지원비 지출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서류 검토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모든기관 연1회, 특별점검 실시)

※ 일반학교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관리: 교육지원청 / 특수학교 학생 관리: 특수학교
(2022년 변경내용: 고등학교 관리 및 지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을 변경)

5-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추진내용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중증 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 제외대상: 취학유예자, 무료통학버스 이용자, 부모가 원하여 자가 통학하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관련 지원 대상자 등

□ 협조 및 유의사항

-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5-3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공·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실현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취원 및 재원 중인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한 장애로, 반드시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유아

■ 운영 내용

- 사립: 1인 월 381천원 이내 실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경비)
※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함

□ 협조 및 유의사항

-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취학유예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 누리과정 지원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람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매월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15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15일 미만 출결 할 때 날짜로 계산함)
- 유아 1인당 학비가 사립 월 38만1천원을 초과할 때도 개인에게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
- 공립 특수학교(급)와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지원 제외임

5-4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

-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같은 법 제26조(방과 후 과정을 운영 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내용

-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 특수학교: 교내 방과 후 과정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 일반학교: 특수학급 방과 후 과정과 일반 방과 후 과정 중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1개 프로그램당(4명 이상 기준, 유치원은 3명 이상) 월 60만원 지원
 - ※ 단,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된 유치원은 지원 제외
- 참여 학생이 1~3명(유치원은 1~2명)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1인당 10만원 지원
- 유치원 특수학교 중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지원 학급은 학생당 운영비 5만원 이내 지원

나.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지원

- 지원대상: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급)
- 지원기준: 방과 후 과정 3명 이상 운영 학급

□ 협조 및 유의사항

-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임
-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누리과정 방과 후 지원비와 중복 지원 불가
- 목적에 맞는 집행 및 복무 관리 철저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보건복지부) 안내

♠ 관련 업무계획 ♠

-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게만 지원**되므로 선정.배치 상황을 정확히 확인 후 실행
 - 치료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방과 후 학교

5-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추진내용

가.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건강장애와 보호필요학생을 대상으로 병원학교 운영과 지원
 - 운영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한누리 병원학교 (<http://www.jb-hospitalschool.kr>)
 - ※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http://hospital.s4u.kr>)
 - 신청 절차: 소속 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병원학교로 직접 신청
→ 병원학교에서 입금 확인서를 소속 학교로 통보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도모
-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나. 원격수업 수강 학생지원

- 만성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연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의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학생에서 원격수업 수강 지원
- 운영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꿈 사랑 학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소속교 담임, 특수교사, 원격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초·중등 교육과정 지원
 - 정규 교과 콘텐츠 제공, 개별 맞춤형 교과 화상수업 지원, 생활 관련 상담 지원 등
 - 초등학교(1일 1시간 이상 수강), 중·고등학교(1일 2시간 수강) 수업 참여
- 원격수업 수강 관련 절차
 - 수강 의뢰: 소속 학교장 → 전북교육청 → 운영기관
 - 원격수업 수강 명단 및 철회 명단 통보(운영기관→전북교육청→소속 학교)
 - 행정 사항 통보: 운영기관 → 전북교육청 → 소속 학교
- 학적과 성적처리 지침 내용
 - (학적 또는 출결)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출결은 위탁 교육기관의 원격수업 참여일 수를 기본으로 함
 - 학교 출석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소속 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음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다.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의 담임(담당)교사 교육 강화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 담임교사나 업무담당자 연수 연 1회 이상 실행
 -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는 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준수
-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 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연수 강화

라. 건강장애 선정 및 재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의료적·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선정
 - ※ 건강장애 선정은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절차 진행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 하였으면 선(先) 교육 지원 가능

마.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교 또는 학생 대상별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신장 및 학업 격차 최소화 등 안정적 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
-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소속 학교 교원, 교우들을 포함하여 운영 필요
 - 심리·상담 지원, 담임 또는 담당 교원 연수, 보호자 교육, 다양한 체험활동 등

□ 협조 및 유의사항

-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활용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시 전달
-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 자체 연수 실행하도록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호자 등의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 확대
- 정신질환 학생은 건강장애 선정과 원격수업 수강 지원대상에서 제외 안내
-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공문으로 반드시 원격수업 수강 해지 절차 안내(1/3 기준 유예기간 부여)

※ 건강장애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용어의 정의
건강장애학생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보호필요학생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질병,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병원학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 교사 1인이 운영하는 학급 형태이나 여러 학교급, 학년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병원학교로 통칭
원격수업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이나 보호필요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강의나 탑재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학습

5-6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같은 법 제22조(개별화교육), 같은 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가. 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지원인력 관리

■ 배치기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중도·중복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기준으로 운영

■ 역할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지원 역할을 담당

1) 특수교육지도사 활용

-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중복 장애학생 1~2명의 교육활동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학교 및 학급의 특수교육 관련 활동과 학생 지도에 대해 지원함

- 특수학급 설치학교: 특수교육지도사를 특수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한다.
-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 특수교육지도사를 일반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를 해당 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로 한다.

※ 국립대 부설 학교는 국고에서 지원

< (참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항
 - ☞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지원 역할 담당
 - ※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 (주요업무)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해 지원역할 담당
 - ※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 지도·평가·상담 등은 지원인력이 대신할 수 없음
-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 욕구 보조)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 보호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
- (학교 적응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2022 교육부 특수교육운영계획에서 발췌

2)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지복무요원

- 장애학생지원 사회복지복무요원의 업무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역할에 따름

업무	복무 분야	주 임무	부수 임무	복무 형태	복무 기관 (근무지)
교육 문화	장애 학생 활동 지원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활동, 승·하차 지도·식사 등 지원	기관운영과 관련된 지원 업무 ※ 부수 임무 수행 조건 • 공익목적 수행 범위 • 주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 부수 임무 예시 • 청소, 제설작업, 행사지원 등 ※ 부수 임무 제한 • 혐오 및 사고위험 분야 • 풍속사범 단속	주간	교육청 및 초·중·고 (사립 포함)

※ 사회복지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15조(복무 분야별 임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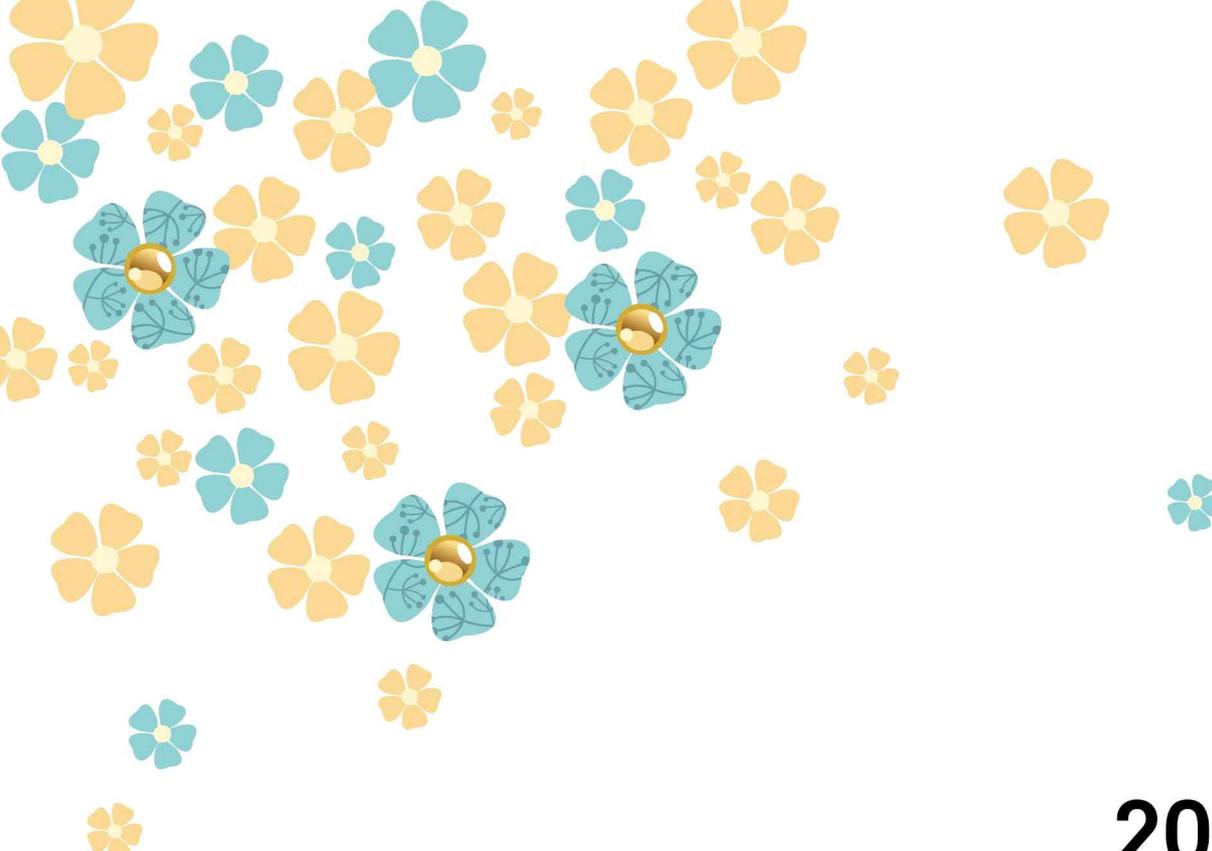
- 사회복지복무요원 16시간 직무교육(교육지원청),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연 2회(학교) 실행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 관리 철저
 - 근무: 방학 중 비상시 근무 직종임
 - 근무 일수: 기존 연봉 체계의 일급 단가 및 연봉기준일 수(290일)는 폐지되고 월급 체제로 전환(2014.1.1.)됨
- 근로시간 준수 철저
 - 주 근로시간 40시간 준수,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 1박 2일 이상 숙박형 체험학습에 특수교육지도사를 동반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학생 지원 업무를 하지 않도록 주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강화(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특수교육지도사의 방과후학교, 돌봄 지원이 고유 업무이므로 방학 중에 실행되는 방과후학교 운영 시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원 실행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해 행·재정업무 역할 부여 금지



2022년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목 차

I.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요	71
1. 운영 목적	71
2. 기본 방침	71
3. 근거	71
4. 노력 중점	72
5. 특색 사업	72
6.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73
II.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용	76
1. 특수교육 지원	76
1-1. 통합교육 컨설팅 및 순회교육	76
1-2.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77
1-3.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담당교사(통합학급 미설치교) 연수	78
2. 교수·학습 활동 지원	79
2-1. 찾아가는 교육과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79
2-2. 특수교육대상학생 『꿈드림』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80
2-3. 뉴스포츠활동 『도전 튼튼교실』 운영	82
2-4. 교수·학습 자료 및 교재교구, 보조공학기기 지원	82
3. 진단평가	84
3-1.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관리 및 상담	84
3-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85
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86
4-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86
4-2.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교육 강화	88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89
5-1. 순회치료 지원	89
5-2.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90
5-3.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91
5-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및 진학지원	94
5-5. 홈페이지 관리와 자료 탑재 및 홍보	96
6.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	97
III. 월별 업무 추진 계획	98

I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개요

1. 운영 목적

-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지원,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가족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학교현장 지원확대
- ◆ 가정·시설 및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제공
- ◆ 지역 여건에 따른 전문적 지원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2. 기본 방침

-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강화, 가족지원 강화
-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 ◆ 지역별 수요 및 특성에 따른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 특수교육 선도
- ◆ 특수교육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협력방안 강구

3.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 ◆ 전라북도교육청 '2022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4. 노력 중점

- ◆ 찾아가는 특수학급 교육과정 지원
- ◆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및 정보 관리
- ◆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 교구 대여 사업
- ◆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프로그램 및 체육활동 활성화

5. 특색 사업

가. 가족지원

- ◆ 특수교육대상 학부모 『꽃맘(MOM)』
- ◆ 행복한 가정 만들기 『똑딱똑딱 목공소』, 『엄마랑 놀이터』
- ◆ 가족지원프로그램 『아름드리 가족지원』
- ◆ 방학 중 형제·자매 통합프로그램 『방실방실 웃어보자』

나. 『꿈드림』 문화예술 동아리

- ◆ 특수교육대상학생 『꿈토리』 인형극 동아리
- ◆ 특수교육대상학생 『샤인드림』 우쿨렐레 동아리
- ◆ 특수교육대상학생 『손으로 만드는 세상』 사진 동아리
- ◆ 『우리들의 이야기』 동아리 발표회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스포츠 활동

- ◆ 유·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프로그램
- ◆ 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프로그램

라. 장애인권보호 프로그램

- ◆ 더봄학생 대상 『마음 만지기』
- ◆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 ◆ 성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우리들의 성』
- ◆ 긍정적 행동지원단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6.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상담실	진단·평가실	치료실	교육활동실	자료실	다목적실	계
	1실	1실	3실	2실	2실	2실	1실 공용	
활용	특수교육 지원	상담지원	특수교육 진단평가	언어치료 및 미술치료 관련 검사 및 치료활동	학생 및 학부모 교육활동	교수·학습 자료 및 보조공학 기기 구비	교육 및 연수 활동	13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및 담당업무

담당	인원	업무	비고
센터장 (교육지원과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통할 	☎450-2612
부센터장 (특수담당 장학사)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조정 	☎450-2830
팀장 (업무총괄)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전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운영위원회 업무 전반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장애학생 성교육 운영 중등 특수교육대상자 프로그램(사진) 운영 특수학급 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연수 운영 	☎450-2800
중등특수교사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방학 중 프로그램(중등)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사업 운영(가족캠프) 중등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대상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중등) 	☎450-2803
초등특수교사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방학 중 프로그램(초등) 운영 특수교육대상 방과후학교 업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450-2802

초등특수교사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2.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3.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수 운영 4.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업무 및 관리 5. 특수교육 통계조사 운영 6. 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 프로그램 운영 	☎450-2805
유아특수교사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2.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3.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4. 유아 특수교육 통계조사 지원 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연수 및 학부모 연수 6. 장애영유아 및 초등 입학적응지원 7.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체육 프로그램 운영 8.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운영위원회 업무 지원 	☎450-2804
유아특수교사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2.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3.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4. 치료지원 관련 업무처리 (꿈활짝 시스템 운영, 꿈활짝 카드 발급 및 관리 등) 5. 유아 의무교육비 업무처리 6. 장애영유아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 기관 7.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8. 긍정적행동지원단 운영 	☎450-2807
초등특수교육 지원강사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2.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3.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정보 관리 4.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사업 운영(꽃맘, 똑딱똑딱목공소) 6. 찾아가는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450-2801
유아특수교육 지원강사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2.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3.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4. 찾아가는 통합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유아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사업 운영(엄마랑 놀이터) 6. 문화예술 꿈드림(인형극, 우쿨렐레) 동아리 	☎450-2810
치료사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료지원(순회, 언어치료) 2. 치료지원 관련 진단 평가 3. 특수교육관련서비스 	☎450-2809

다. 2022학년도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역점사업

추진 계획	추진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영·유아와 미취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견 및 정보수집관리 ■ 장애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선별검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일반유치원 배치 확대 및 학비 지원에 대한 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단 운영
진단·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진단·평가 위원회 운영(특수교사, 치료사) ■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에 대한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에 따른 제반 교육적 서비스 안내
상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활동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에 대한 상담 활동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배치에 대한 상담 활동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과 연계한 조기발견 및 정보관리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장애유아 의무교육 지원 홍보 및 상담 ■ 장애 유아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영·유아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영·유아 담당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교수학습 지원 및 통합교육 지원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 개별화 교육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전반적 통합교육 지원 ■ 긍정적행동지원단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 연수 운영 ■ 특수학급 재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꿈드림』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인형극, 우쿨렐레동아리) ■ 방학 중 형제·자매 통합프로그램 운영
순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택 및 시설 유·초·중등 또는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학생의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치료사 활용 내방 및 순회 치료지원 실시 ■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령기아동 대상으로 치료지원 제공 ■ 특수교육 대상학생 순회치료대상자 선정 및 치료지원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실시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교재교구와 학습 보조기 관리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후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상담 ■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서포트 프로그램 <꽃맘> 운영 ■ 부모교육 연수 운영 ■ 장애 유아 교육 및 가족지원 「엄마랑 놀이터」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성교육전문가, 학부모, 경찰관 위원으로 인권지원단 구성 ■ 월 최소1회 학교방문 모니터링 ■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담

II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용

1 특수교육 지원

1-1. 통합교육 컨설팅 및 순회교육

목적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며 각 학교에서 수업일수의 2/3이상을 등·하교하면서 교육받기에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순회교육의 체계적 접근을 통한 교수학습 효과 제고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제 25조(순회교육 등)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진사항	내용	대상	시기	비고
통합교육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전략 및 방법 지원 - 특수교육 관련 자료 대여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자료 구입 및 지원.대여 - 통합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적 수정방안 안내 -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개별화교육 지원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관내 특수학급, 통합학급 교사	수시로	
순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1인당 주2회 이상 방문교육을 원칙 - 순회교육계획 수립 -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작성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순회교육지원 - 학교에서 순회교육 신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순회교육 실시 - 순회교육 평가 - 순회교육 중단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재택 또는 시설학생,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학생	2022.3월~ 2023.2월	

1-2.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목 적

장애의 조기발견 및 선별로 2차적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시켜 가계 부담 경감 및 사회비용의 최소화로 사회통합을 추진하고자 함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 지원), 동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추진사항	내용	대상	시기	비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조기발견 및 정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선별검사 지원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 연계한 장애 영·유아 정보관리 	장애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장애위험 영·유아	수시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홍보, 상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 유아 유치원 의무교육, 장애유아교육비 및 지원비 홍보 - 홍보자료제작 및 배부(유관기관, 유치원, 학교 등), 홈페이지를 통한 특수교육 지원내용 안내 - 내방 및 전화 상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공·사립 유치원 재학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수시로	
특수교육대상 유아 순회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립유치원 및 시설 거주 특수교육대상 유아 순회교육 실시(주2회) 	공·사립 유치원 재학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2022.3월~ 2023.2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통합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통합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 대상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4월~	
장애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유아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엄마와 함께하는 『엄마랑 놀이터』 운영 - 장애 영·유아 학부모 연수 - 특수교육대상 유아 취학 전 준비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체육 프로그램 운영 	공·사립 유치원 재학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4월~	

1-3.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특수교육 담당교사 연수

목 적

특수학교(급) 교원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대 및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8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운영방침 : 통합학급 교사 지원을 위한 사례중심, 현장중심 연수 실시

나. 연수운영 방법 :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및 강사초빙 연수 강의

추진사항	내용	대상	시기	비고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육 담당교사(특수학급 미설치교) 연수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협의 및 설명회 등 - 특수교육 전문가로서의 연수	관내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육 담당교사	2월 or 4월 5월, 10월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 연수	- 특수교육대상자 인성 키움 방법 등	관내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	9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연수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연수 등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장애전담 및 통합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관장, 담당교원	6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인력 역량 강화 연수	- 진단·평가 관련 및 전문성 신장 연수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인력(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	5월~	

2 교수·학습 활동 지원

2-1. 찾아가는 교육과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목 적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다양한 주제 및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특수교육력을 강화하고 특수 교사의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명	찾아가는 특수학급 교육과정지원_과학교육프로그램 『슬기로운 과학생활』	찾아가는 유치원 통합교육과정 과학교육프로그램 『호기심 팡팡』 운영
목 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연령과 지적발달에 알맞은 과학적 흥미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중심의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력 증진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지원을 통해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일반유아와의 조화로운 교육환경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도모
기 간	2022. 4. ~ 2022. 12.	2022. 5. ~ 7. / 2022. 9. ~ 11.
대 상	초·중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재학하고 있는 유치원의 통합학급
내 용	과학교육프로그램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 놀이터
방 법	전문강사 파견 프로그램 운영, 학급별 5회기	전문강사 파견 프로그램 운영, 학급별 5회기
장 소	각급 특수학급	해당 유치원의 통합학급

2-2. 특수교육대상학생 『꿈드림』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표현력 향상 및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친구들과의 유대감 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 의사소통 및 사회성 기술 향상, 심리적·정서적 안정 도모, 향후 공연 및 행사 찬조 출연 등 장애인식개선 홍보단 활동

가. 『꿈토리』 인형극 동아리 운영

가) 목적 : 인형 만들기, 더빙, 인형 조작 및 연기 연습을 통한 표현력 향상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나) 운영 및 실시

일 시	2022. 4. ~ 2022. 12.(방학기간 제외)
대 상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10명 이내)
내 용	발성 및 구연 연습, 개작 및 대본쓰기, 더빙, 인형 조작, 인형 만들기, 인형극 연습하기
방 법	학기 중 센터 내방프로그램 운영, 주 1회 강사 1인 및 보조강사 2인의 강습 및 연습
장 소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활동실 1, 2 및 다목적실

나. 『샤인드림』 우쿨렐레 동아리 운영

가) 목적 : 리듬 및 코드 배우기, 노래 부르기 및 앙상블 연주를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소질 계발

나) 운영 및 실시

일 시	2022. 4. ~ 2022. 12.(방학기간 제외)
대 상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10명 이내)
내 용	연주자세 및 기본음계 익히기, 코드 익히기, 리듬 및 연주기법 익히기, 앙상블 연주하기
방 법	학기 중 센터 내방프로그램 운영, 주 1회 강사 1인 및 보조강사 1인의 강습 및 연습
장 소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활동실 1, 2 및 다목적실

다. 『손으로 만드는 세상』 사진 동아리 운영

가) 목적 : 사진찍기를 통해 중등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여가활용능력과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키며 또래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

나) 운영 및 실시

일 시	2022. 4. ~ 2022. 12.(방학기간 제외)
대 상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내 용	디지털 카메라 조작 방법 배우기, 촬영 시 에티켓 배우기, 사물 및 인물 사진 촬영하기, 전시를 통한 자신의 작품 만들기 등
장 소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및 군산 일원

라.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발표회』 개최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 학생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활동 발표회를 통한 표현력 향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예능발표회 및 공연

나) 운영 및 실시

시 기	2022. 12.
참 가 팀	인형극 동아리, 우쿨렐레 동아리, 사진 동아리 등
내 용	인형극 공연, 우쿨렐레 앙상블 연주, 사진작품 전시회 등
관람대상	동아리 참가학생 가족 및 해당학교 교사, 그 밖의 관심있는 자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

2-3. 뉴스포츠 활동 『도전! 튼튼교실』 운영

뉴스포츠(유아체육, 레크체육, 볼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사회적, 감각운동 및 인지적 효과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협동활동에 긍정적인 효과 도모

프로그램명	유아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 프로그램	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 프로그램	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 프로그램
기 간	2022. 5. ~ 2022. 11. (방학기간 제외)	2022. 5. ~ 2022. 11.	2022. 4. ~ 2022. 12. (방학기간 제외)
대 상	관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희망자 중 신체활동 가능한 학생	관내 초등학교 특수교육대 상학생 희망자 중 신체활 동 가능한 학생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 상학생
내 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활 동(유아체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활 동(레크체육)	볼링(예정)
방 법	교육장소(미정)로 방문하여 운영	교육장소(군산장애인체육 회)로 방문하여 운영	교육장소(볼링장)로 방문하 여 운영
장 소	미정	군산장애인체육회관	볼링장

2-4. 교수·학습 자료 및 교재교구,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 적

교수·학습 활동 수정, 보완 및 개선이 되도록 지원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맞는 교육매체와 교육방법 제공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제 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 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가. 운영

- 1)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에 대한 지원
- 2)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교수·학습 자료 지원

- 3) 특수교육 교수·학습 자료 대여 및 특수교육관련 자료 지원
- 4) 특수교육 교재교구, 학습 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관리
- 5) 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실 및 연수 장소로 활용

나. 방침

- 1) 지원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장애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함
- 2) 교수학습 관련 자료 지원은 1회 1기기 1품목으로 함
- 3) 대여기간은 1년(대여일~2022년 2월 28일)으로 하고 연장신청 가능
- 4) 기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기구는 사용 방법에 알맞게 사용
- 5) 모든 교재·교구의 관리 및 지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나, 학교에 지원된 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책임관리

다. 내용

- 1) 특수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부모용 도서, 전공 도서, 각종 유익한 비디오 자료, 장애학생에 맞는 교재, 교구 등) 자료 제공
- 2)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 자료 대여
- 3) 각 학교별로 구비하기 어려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특수교육의 질 제고

3 진단·평가

3-1.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관리 및 상담

목 적

미취학 및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자를 발견하여 조기에 특수교육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특수교육대상 정보관리

- 1) 일시 : 연중
- 2) 실시 및 내용
 - 가) 장애영유아와 미취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견 및 정보관리
 - 나)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수시 선별검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 구축
 - 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일반유치원 배치 확대 및 학비지원에 대한 안내
 - 라) 학령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견 및 정보관리

나. 특수교육 상담 지원

- 1) 일시 : 연중
- 2) 장소 : 특수교육지원센터
- 3) 실시 및 내용
 - 상담 신청 및 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전화신청, 내방 등을 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상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 상담자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및 치료사 ▪ 장애영·유아 지원교사
상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월~금)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내방 상담
상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관련 (진단·평가, 부모교육, 교과교육, 통합교육, 치료지원, 방과후·방과중 활동, 교육적 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및 치료사 ▪ 장애영·유아 지원교사

3-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목 적

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진단 및 평가 지원 및 취학의무 면제자 및 유예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 후 학교 지정·배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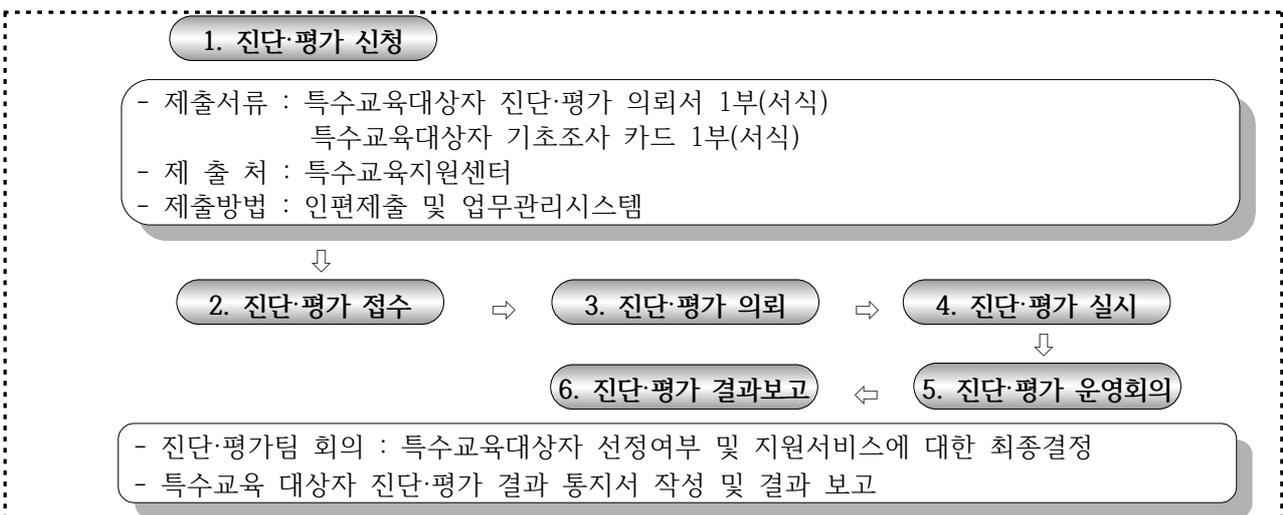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제 14조 ④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운영

- 1) 장애영유아 및 학령기 장애아를 대상으로 실시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에 대한 안내 및 그에 따른 제반 교육적 서비스 안내
- 3) 필요시 MOU 업무협약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보공유
- 4) 진단·평가 팀 운영

진단평가팀 구성			
장학사	특수교사	치료사	외부위원
특수교육 담당장학사	유·초등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강사(유특) 특수교육지원강사(초특) 중등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육관련 전문가

- 5)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 사전 신청을 받아(진단·평가 의뢰) 진단 및 검사 실시, 전화 상담 및 면담 등



나. 월별계획

월별	내 용	비 고
4월	제1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7월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9월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고등학교 진학)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	
11월	제4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4-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목 적

상시모니터링 기능 및 상시 관리체제 확립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도가니법)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목적

- 1) 상시모니터링 기능 및 상시 관리체제 확립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 폭력·성폭력 예방
 - 가)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학교 폭력, 성폭력 미연에 방지**
 - 나) 장애학생 중 더봄학생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위험 노출 방지
- 2)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 분위기 확산
- 3)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책무성 강화
- 4)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 5) 적극적인 예방 활동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 1) 센터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특수학교(급) 교장(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필수 인원으로 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

다.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 더봄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마음만지기』

- 가) 목적 : 더봄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긍정적 자아상 확립 및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22. 5. ~ 2022. 7
대 상	더봄학생 중 희망자
내 용	원예치료, 그릇공예 등 10회기
방 법	전문강사 학교 파견하여 개인 및 그룹별 활동
장 소	해당 학급 교실(학교에서 별도의 장소 제공)

2)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

연수방법	교육 내용	대 상	시 기	비 고
강사초빙	•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논의	특수교사	4월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10월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4-2.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교육 강화

목 적

장애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학교 폭력과 성폭력 예방 등 인권보호, 안전지원,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강화

⇒ 근거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동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동법 제21조(통합교육)

프로그램명	일반학급 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건강한 우리들의 성』
목 적	장애학생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권교육을 통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기반 마련	장애학생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바람직한 성 태도 및 가치관 확립과 성폭력 예방 포함,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장애학생의 대처 능력 향상
기 간	2022. 5. ~ 2022. 11.	2022. 4. ~ 2022. 7./2022. 9. ~ 2022. 12.
대 상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유·초·중·고등학교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20개교
내 용	인권의 개념 및 인권교육의 역할	성교육 전문강사 학교 파견 학교당 5~10회기 강의
방 법	학교(학급)로 장애인권교육 전문 강사 파견	학교(학급)로 성교육 전문 강사 파견하여 성교육 및 예방교육
장 소	각급학교	해당 학급 교실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5-1. 순회치료지원

목 적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2차적 장애를 예방하고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②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일시 : 2022. 3. ~ 2023. 2.

나. 대상

- 1)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제공 절차에 의해 순회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치료지원 절차 준수)

다. 방침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규정된 치료지원 제공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
- 2) 의사의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 3) 치료지원 제공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 4) 치료지원비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지원예산 초과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라. 치료지원 진단·평가팀 구성

치료지원 진단·평가팀 구성		
장학사	특수교사	치료사
특수교육 담당장학사	유·초등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강사(유특) 특수교육지원강사(초특) 중등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마. 순회치료지원 제공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

- 1) 지원방법 : 순회(소속학교, 가정)치료, 센터 내방치료
- 2) 지원시간 : 학생당 주2시간 이상
- 3) 지원대상 : 순회치료지원계획에 따름

구 분	제 공 방 법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센터치료사를 활용한 내방 및 순회치료지원 실시
각급학교/시설 활용	치료사가 학생의 학교, 시설을 방문하여 치료지원 제공

바. 기타 사항은 '2022년 치료지원 운영 계획' 참조

5-2.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목 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화교육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성과 제고

-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1조(통합교육), 동법 제28조(관련서비스), 25조(보조인력)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운영

- 1)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현장중심 연수 실시
- 2) 장소 : 군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

나. 세부 일정 및 주제

연수방법	교육 내용	시 기	비 고
강사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례중심,현장 중심 연수 실시 • 강사 초빙을 통한 3일 집합연수 	2022. 1.	군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

5-3.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목 적

장애인의 교육 및 양육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지원망과 관계망을 통하여 가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4장 제 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 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부모교육

-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녀의 긍정적 행동 지원 및 관계 증진 강화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22.4.	2022.5.	2022.6.
대 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장애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주 제	청소년기 성교육	라탄공예	그림책을 활용한 자녀 놀이 방법
내 용	전문이론강의	소양교육	소양교육
방 법	전문강사 내방 프로그램 운영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및 교육활동실		

* 주제는 센터 상황 및 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동아리 『꽃맘(MOM)』 운영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육아에 지친 학부모의 스트레스 해소 및 격려를 통하여 학부모 자신은 물론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간의 동료의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한 생산적인 의사소통의 장 마련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22. 7. ~ 2022. 11.
대 상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내 용	토의활동, 소양교육, 여가활동
방 법	·소모임으로 운영(동아리)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활동실 및 다목적실

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똑딱똑딱 목공소』 운영

- ###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형제자매, 학부모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간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며 내면의 부정적 자아감 극복 및 문제행동 감소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22. 4. ~ 6. / 2022. 9. ~ 11.
대 상	초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정
내 용	목공프로그램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활동실2

라. 『아름드리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다른 가족과의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부여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22. 10.(예정)
대 상	특수교육대상자 18가정 (예정)
내 용	학생프로그램, 부모프로그램, 가족나들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장 소	미정

마. 장애유아 교육 및 가족지원 『엄마랑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가) 목적 : 가족 간 애착감 강화 및 정서적 안정, 자기표현의 기회 제공 및 긍정적 자
아개념 형성, 창의성 향상 및 소근육 발달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22. 5. ~ 7. / 2022. 9. ~ 11. 주 1회, 15:30 ~ 16:30(각 10회기씩)
대 상	공사립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특수교육대상 유아 및 장애위험 유아와 학부모(엄마)
내 용	엄마랑 함께하는 동화랑 요리랑 놀이랑
참가인원	상·하반기 각 4가정(특수교육대상유아 1명과 학부모(엄마) 1명 1가정) 참여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활동실

바. 방학 중(계절제) 형제·자매 프로그램 『방실방실 웃어보자』 운영

가) 목적 : 형제자매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이해하고 상호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도
모하며, 참여학생들간의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성 증진과 다양한 체험
활동 및 문화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여름방학 : 2022. 8. (예정)
대 상	·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형제·자매 8가정(총 16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중 희망자
내 용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 형제·자매 체험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의 이론 및 소양교육
장 소	미정

5-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및 진학지원

목 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특성에 맞춘 유·초·중학교의 정보 제공의 장 마련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가.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적응 지원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후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생활 안내
- 학교 방문 및 학생 학교생활 적응교육과 부모 상담

나) 운영 및 실시

초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적응지원 학부모 간담회	기 간	2022. 4.
	대 상	초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내 용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 적응 지원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학부모 연수	기 간	2022. 12.
	대 상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유아 학부모
	내 용	우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학교생활 안내>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학교 견학	기 간	2022. 12. ~ 2023. 1.
	대 상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유아 및 학부모
	내 용	학생 학교생활 적응교육 및 부모 상담
	장 소	해당 초등학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및 진학지원을 위한 설명회

가. 운영

- 1)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의 유·초·중 입학에 있어서의 취학 및 진학의 정보 획득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학교 배치 안내

나. 세부추진계획

- 1) 대상 : 2023학년도 취학 및 진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 유·초·중학교의 관심 있는 학부모 및 특수교육 담당교원
- 2) 시기 : 2022. 6.
- 3) 장소 :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 및 교육활동실
- 4)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담 당
설 명 회	1부 설명회	60분	* 2022학년도 취학 및 진학 설명회 - 취학 및 진학 절차 및 지원내용 안내 -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안내 및 발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용 안내	관내 특수학급 교사
	2부 개별 상담	설명회 이후~	각 학교(급)별 담당교사 부스 운영 개별상담	해당 학급 교사

5-5. 홈페이지 관리와 자료 탑재 및 홍보

목 적

특수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홍보물 발간, 상담활동 운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및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제 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독자적 홈페이지 운영

- 1) 기간 : 2022. 1. ~ 2022. 12.
- 2) 홍보 URL : 특수교육지원센터 (군산교육지원청 배너)
- 3) 특수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서비스 확대
- 4) 군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
- 5) 특수교육 소식 전달, 홍보, 이해의 장으로 활용
- 6) 자료실을 통해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환

나. 홍보자료 제작

- 1)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홍보활동 : 자료 탑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및 이용에 대한 홍보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물 제작·배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 내용과 지원내용이 담긴 홍보자료 및 물품을 제작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비치
 - 나) 유·초·중학교 및 지역기관 등에 홍보물 배포
- 3) 보도기관 구축·활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사 관련 보도 자료를 이용한 홍보

다. 교육지원청 행사 및 기관방문을 통한 홍보활동

시 기	장 소	방법 및 내용
2022.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청 및 주민센터 •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물 발송 • 유관기관 방문 홍보
2022.10.	군산교육지원청 주관 행사	지원센터 홍보물(리플렛, 기념품 등) 배부 및 장애체험 부스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홍보

6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

목 적

장애유형과 정도,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일반학교에 배치된 지체장애 학생 지원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가. 목적

- 1) 일반학교에 배치된 지체장애학생의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2)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체장애학생의 개별화, 특성화된 지원
- 3) 지체장애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의 지원으로 교육기회 증진

나.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지원 선정 및 구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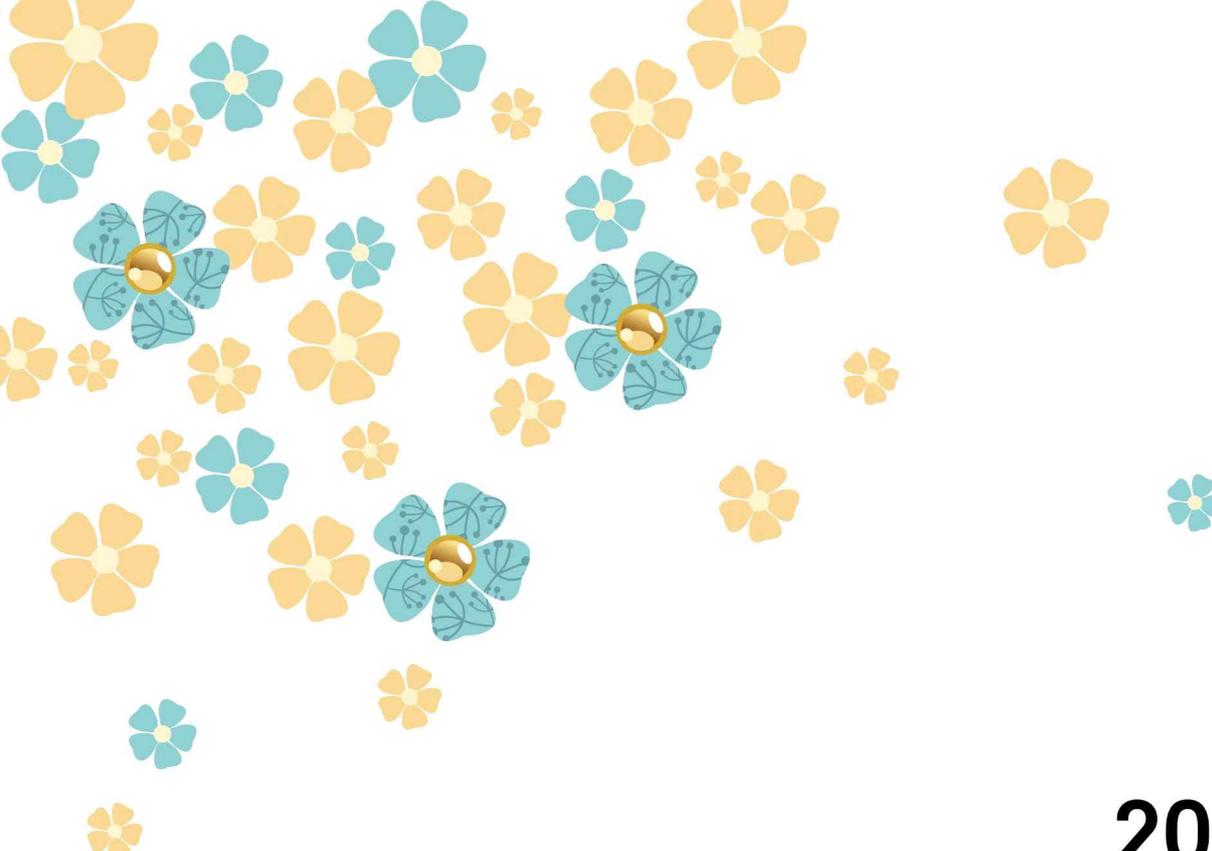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도내 각 지역교육청으로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하여 수요조사 및 실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파악 (군산은 각 학교로 공문 발송)	4월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및 도내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에 관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원할 보조공학기기 선정 후 군산교육지원청으로 선정 결과에 관한 서류 및 신청서 제출	4월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해당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입찰 및 구입 진행	5월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비치 및 대여	5월~12월

Ⅲ

월별 업무추진 계획

사업명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장기 프로그램	순회교육	■												
	진단평가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장애인권교육					■	■	■	■		■	■	■	
	성교육프로그램 『건강한 우리들의 성』				■	■	■	■	■		■	■	■	■
	학부모 동아리 『꽃맘(MOM)』							■	■	■	■	■	■	■
	『꿈드림』 문화예술동아리			■	■	■	■	■	■	■	■	■	■	■
	찾아가는 교육과정지원 『슬기로운 과학생활』				■	■	■	■	■	■	■	■		
	찾아가는 유치원 통합 과학교육지원 『호기심 팡팡』					■	■	■	■		■	■	■	
	행복한 가정 만들기 『똑딱똑딱 목공소』				■	■	■	■			■	■	■	
	초등 체육프로그램 『우리두리 체육교실』					■	■	■	■		■	■	■	
	중·고등 체육프로그램					■	■	■	■		■	■	■	■
	『마음마다 걸음마다 사진마다』 사진교실				■	■	■	■	■		■	■	■	■
	영유아 프로그램 『엄마랑 놀이터』					■	■	■	■		■	■	■	
	교사연수				■	■	■	■	■	■	■	■	■	■

사업명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단기 프로그램	학부모 연수 『소양교육, 영유아 학부모 연수』				■	■	■				■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												
	유아체육프로그램					■	■	■	■	■	■	■	■	■
	방학 중 형제·자매 프로그램 『방실방실 웃어보자』									■				
	『아름드리 가족지원 프로그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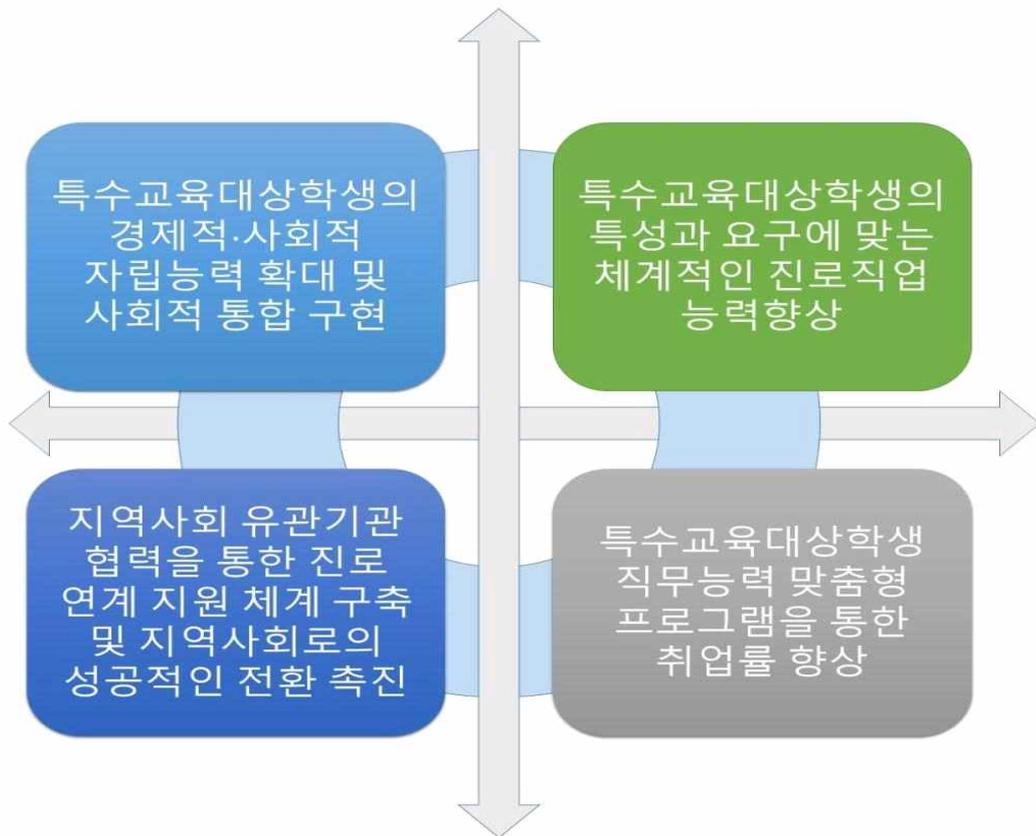
2022년
군산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목 차

I.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개요	105
1. 운영 배경	105
2. 운영 근거	106
3. 운영 현황	106
II. 운영 내용	109
1. 학생 지원 프로그램	109
1-1.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109
1-2.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109
1-3. 진로직업교육 자격증 과정	111
1-4. 중학교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112
1-5. 취업준비프로그램 「스타트 잡스(Start-Jobs)」 운영	112
1-6. 순회교육	113
1-7.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114
1-8. 특수학급 차량 운행 지원 「버스 타GO!」	115
1-9. 센터 시설 대여 프로그램	116
2. 특수교사 연수 지원	117
2-1. 관내 특수교사 역량강화연수	117
2-2. 권역 특수교사 진로직업역량 강화 연수	117
3. 학부모 연수 지원	118
3-1. 학부모 진로진학 설명회	119
III. 월별 업무추진 계획	120

I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개요



1 운영 배경

- 가.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18~2022)’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다. 「진로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 마련 필요
- 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 진로역량 개발 필요

2 운영 근거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 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 라. 2022년도 특수교육 운영 계획(교육부)
- 마. 2022 전라북도특수교육 운영 계획(전북교육 2022-064)
- 바. 전라북도교육청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20~'22)

3 운영 현황

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상담실	직업평가실	직업훈련실	카페테리아	자료실	다목적실	계
	1실	1실	2실	5실	1실	2실	1실 공용	
활용	진로직업 센터 업무	상담 업무	직업평가 직업준비도 및 직업능력검사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바리스타 교육 외식서비스 실습	교수-학습 자료 및 기자재 보관	교육 및 연수 활동	13

나.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및 담당업무

직 위	인 원	업 무	비 고
센터장 (교육지원과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총괄 	☎ 450-2612
부센터장 (장학사)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기획 및 운영 2.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및 복무관리 	☎ 450-2830

<p style="text-align: center;">팀장 (중등 특수교사)</p>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반업무 2.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3.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4.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운영 5. 취업준비프로그램 운영 6. 권역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지원 7. 취업 지원·관리 및 현장 실습 운영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사업체 현장 실습 운영 8.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관리 9.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및 복무관리 10. 프로그램 강사 근무 및 운영 관리 11. 주요업무보고 작성 및 보고 	☎ 450-2820
<p style="text-align: center;">중등 특수교사</p>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2.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3. 고등학교 자격증반 운영 4. 중학교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5. 학부모 진로진학설명회 운영 6.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지원 7. 권역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지원 8. 프로그램 강사 근무 및 운영 관리 9. 카페테리아 관리 및 물품 구입 10. 청소원 근무일지관리 및 근태 지원 	☎ 450-2824
<p style="text-align: center;">중등 특수교사</p>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2.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3. 중·고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4. 권역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지원 5. 권역 특수교사 진로직업 역량강화 연수 6. 프로그램 강사 근무 및 운영 관리 7. 전북 IT페스티벌 대회 지원 	☎ 450-2821
<p style="text-align: center;">중등 특수교사</p>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2.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3. 초등 진로직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권역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지원 5.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6. 프로그램 강사 근무 및 운영 관리 7.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차량지원 프로그램 운영 8. 소모품·교재교구 비품 관리 	☎ 450-2823
<p style="text-align: center;">주 무 관</p>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 교육 프로그램 버스 운행 및 점검 2.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차량 운행 지원 3. 센터 시설 점검 및 관리 	☎ 450-2822

특수행정실무사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원 3. 센터 주간·월간 업무 취합 	☎ 450-2825
---------	---	--	------------

다. 2022학년도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추진사업

추진 사업	추진 내용
진로상담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담당교사, 학생 진로상담 활동 ■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준비도 및 직업흥미검사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능력검사 실시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급별 진로·직업 교육 운영 ■ 도예, 요리, 목공, 공예 교육 등
직업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바리스타, 컴퓨터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찾아가는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급별 찾아가는 직업교육 운영
권역 진로직업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김제, 부안, 고창, 정읍)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지원 ■ 권역 특수교사 진로직업 역량강화 연수
취업준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기관 섭외 및 담당자 협의체 구축 ■ 고등학교 대상 운영 ■ 대상학생 사전교육 및 현장 직무 지도 관리 ■ 맞춤형 현장 직무 실습
순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학생의 순회교육 지원
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진로·직업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사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학부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진로진학 설명회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유지 관리 ■ 홈페이지 자료 탑재 및 홍보
특수학급 차량 운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단위의 현장체험학습, 직업탐색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 지원
센터 시설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직업훈련실 장소 및 기자재 제공

II

운영내용

1. 학생 지원 프로그램

1-1.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가. 진로상담 및 평가

목 적

- 진로상담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에게 상담 및 평가를 통해 학생의 기초자료 구축 및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을 결정

1) 운영방침

- 가) 취업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나) 상담 자료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업연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다) 다양한 방법(센터 내방, 고용공단 연계 등)을 통하여 상담 및 평가 실시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22. 7. ~ 2022. 8
- 나) 장소 : 군산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교사
- 라) 내용 : 진로상담의 기초이며 학생과 부모의 면담으로, 장애특성 및 강점과 약점, 학습 능력을 파악하여 진로프로파일을 구축함

1-2.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목 적

-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교육기관이나 센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도 직업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함
- 생애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 중심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진로탐색역량 강화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의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가치와 태도 등을 함양

1) 운영방침

- 가) 군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군산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내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분야별 전문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교육 실시
- 나) 각 학교의 소요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 요구 조사
- 다) 각 학교별 신청 접수 이후 일정을 조정하여 통보
- 라) 학급별 1개 강좌 운영
- 마)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운영 점검 실시
- 바) 학교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경우 담당교사 및 강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22. 4. ~ 2022. 11. (신청학교 희망 일자)
- 나) 장소 : 각 신청학교 특수학급
- 다) 대상 : 관내 특수학급학생
- 라)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교육 실시

학교 급	교육과정 및 내용
초	원예(식물심기, 하바리움, 토피어리 만들기, 다육이 심기 등)
	이미지메이킹(기초세안·클렌징, 마사지, 퍼스널컬러, 메이크업 등)
	키즈쿠키(유부초밥, 소떡소떡, 햄버거, 프렌치토스트 만들기 등)
	댄스드로잉(마스킹 테이프 드로잉, 얼굴 드로잉, 움직임 드로잉, 협력 드로잉 등)
	생활도예(오리 꽃병, 머그컵, 과일바구니, 나눔 접시 만들기 등)
중·고	가족공예(조리도구 사용법 알기, 열쇠고리 만들기, 다용도 파우치 만들기 등)
	원예(식물심기, 꽃케이크, 토피어리 만들기 등)
	바느질공예(미니핸들백, 파우치, 티셔츠 만들기 등)
	캘리그래피(엽서, 벽시계, 종이가방, 부채 만들기 등)

(* 상기 교육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3. 진로직업교육 자격증 과정

목 적

- 관련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
- 관련 직무 경험을 통한 직업세계 이해

1) 운영방침

- 가) 각 학교별 일정 조사 실시
- 나) 각 학교별 신청 접수 이후 일정을 조정하여 공문 발송
- 다) 교육의 효율성 및 교육장소 규모를 고려하여 교육 인원을 한정
- 라) 교육장소로의 이동 및 귀가 계획은 가정에서 별도로 수립
- 마)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2) 세부운영계획(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 기간 : 2022. 4. ~ 12.
 - 바리스타: 1회기 2시간 수업, 주 2회, 총 20회 수업(특수학급 학생)
 - 컴퓨터: 1회기 2시간 수업, 주 2회, 총 24회 수업(특수학급 학생)
- 나) 장소 : 군산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 바리스타: 1층 꿈터 카페
 - 컴퓨터: 2층 정보교육실
- 다) 대상
 -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 컴퓨터 자격증 과정 :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 라) 내용
 -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프로그램	세부내용
유럽 바리스타 자격증반	커피의 역사, 커피 식물학, 에스프레소 원리/실습 및 추출, 우유 거품 만들기. 바닐라라떼, 카페모카, 아이스 초코 등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일정 시간 이수 및 시험통과 후 자격증 취득

- 컴퓨터 자격증 과정 :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프로그램	세부내용
ITQ한글 고등학교	타자연습, 한글문서작성, 스타일, 표, 차트, 수식 등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실기시험 이후 취득점수에 따라 A~C 등급의 ITQ한글 자격증 취득
ITQ엑셀 고등학교	타자연습, 엑셀문서작성, 표, 차트, 함수 등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실기시험 이후 취득점수에 따라 A~C 등급의 ITQ엑셀 자격증 취득

1-4. 중학교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목 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회 제공
-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컴퓨팅 사고력 함양

1) 운영방침

- 가) 각 학교별 일정 조사 실시
- 나) 각 학교별 신청 접수 이후 일정을 조정하여 공문 발송
- 다) 교육의 효율성 및 교육장소 규모를 고려하여 교육 인원을 한정
- 라) 교육장소로의 이동 및 귀가 계획은 가정에서 별도로 수립
- 마)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2) 세부운영계획(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 기간 : 2022. 9. ~ 12.(주1회 15회 실시 예정)
- 나) 장소 : 군산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2층 정보교육실
- 다) 대상 : 관내 중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 라) 내용 : 컴퓨터 기초교육 및 코딩교육 등

1-5. 취업준비프로그램 「스타트 잡스(Start-Jobs)」 운영

목 적

- 현장실무 경험 전 직무능력 및 직무기술 지원
- 관심 직종에 관한 사전경험을 통해 관련 직무기술 숙련 기회 마련
-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동료의식 형성 및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기회 마련

1) 운영방침

- 가) 다양한 직무를 체험해 봄으로써 실제 직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적응능력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
- 나)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
- 다)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학생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22. 5. ~ 2022. 11.

나) 대상 : 관내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현장실습은 고3학년 대상)

다) 내용 : 지역사회와 연계한 도제형 직무실습 교육

(* 상기 업종, 기관명,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6. 순회교육

목 적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교육욕구에 따른 학습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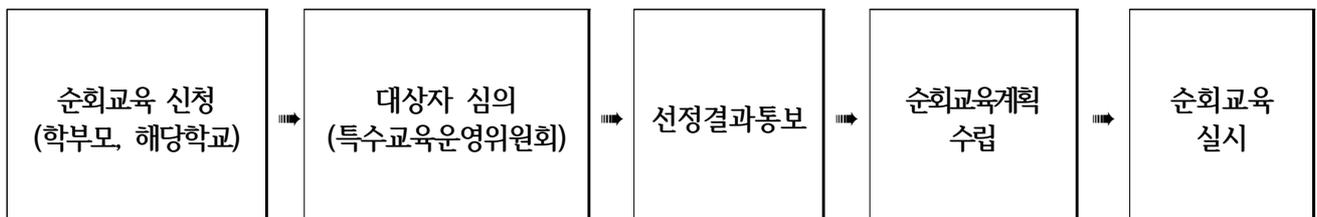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조(의무교육 등), 동법 제 25조(순회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1) 운영방침

-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학생을 선정
- 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학교 담임교사와 협의 후 순회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
- 다)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르되 대상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 거주지, 학부모의 의견 등이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개별화교육 실시
- 라) 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기타 종합 의견은 순회학급 담임교사가 제시 또는 평가한 내용을 기재
- 마)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학생 지원
 -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2) 순회교육대상자 선정 방법

- 가) 선정 방법: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정
- 나) 선정 절차



다) 순회교육 중단

- 재택 및 시설 순회교육 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 중 수업일수의 2/3이상의 출석이 가능해진 경우는 순회교육을 중단 요청 시 중단할 수 있음
- 신청학생 보호자의 중단 요구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회교육을 중단할 수 있음

1-7.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가. 지역사회 연계

목 적

- 직업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기업체 발굴을 통하여 장애학생들의 현장훈련 및 취업 기회 증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③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 가)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사업체 등 직업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나) 직업관계기관과의 진로직업교육 업무협약 체결
- 다) 기관간의 역할에 따른 직업교육 연계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22. 3. ~ 2022. 12.(연중)
- 나) 대상 : 지역사회 유관기관
- 다) 내용
 -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회 실시
 - 정기적 직업관계기관 방문 및 협의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사업 연계

나. 센터 홍보 활동

목 적

- 진로직업교육 중요성 홍보 및 지역사회 내 통합 촉진
- 특수교육대상학생 고용 홍보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1) 운영방침

- 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물 직업관계기관에 배부
- 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다) 지역사회 홍보를 통한 장애인 진로직업인식 개선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22. 3. ~ 2022. 12.(연중)
- 나) 내용 : 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관련 홍보

1-8. 특수학급 차량 운행 지원 「버스 타GO!」

목 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과 학급 및 학교 실정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직업탐색활동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 지원
- 차량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학생 수송으로 교육의 효과 상승

1) 운영방침

- 가) 군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신청을 받아 차량지원이 이뤄지도록 진행
- 나) 학기 중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 지원
- 다) 운영가능지역은 전북 도내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간 범위 내 타시도 이용 가능
- 라) 한 학기별 학교급마다 1회씩 지원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기간 내 신청학교 희망일자 09:00~16:00 이용을 원칙으로 함
- 마) 단, 부득이한 사정(프로그램 운영 등) 발생 시 이용일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최소 10명 이상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10명 미만인 경우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 (대표 학교 1곳 공문 발송 가능)
- 사) 이용 희망일이 중복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함
 - 아) 이용 일주일 전 이용 인원(인원 변경 시 명단 포함) 및 현장체험 계획서 공문으로 제출
 - 자) 차량지원만 가능하므로 주차비 및 통행료는 해당학교에서 부담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신청학교 희망일자
- 나)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 다) 신청방법 : 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군산교육지원청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차량이용 계획서 1부

1-9. 센터 시설 대여 프로그램

목 적

- 각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제한적인 환경으로 진로·직업교육의 실시가 어려운 특수학급에 센터의 장소 및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도모

1) 운영방침

- 가) 특수학급별 특성 있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계획(예산포함)은 각 특수학급에서 수립
- 나)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훈련실 장소와 기자재만 제공
- 다) 프로그램 실시 최소 2주 전에 공문으로 신청서 제출
- 라) 운영권역지역에서 진로직업센터 실 이용 요청 시 공문으로 신청 받아 대여할 수 있음.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22. 4. ~ 2022. 12.
- 나) 장소 : 군산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통합학급 담당자
 - 군산권역(고창, 김제, 부안, 정읍)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통합학급 담당자
- 라) 신청방법 : 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군산교육지원청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프로그램 계획서 1부

◎ 대여 장소 안내

순	실 명	사 진	설치기자재	용 도
1	직업훈련실1 (생활요리실)		전기렌지 8개, 조리대 8개, 개수대 8개	요리실습이나 기타 실습실로 활용 가능
2	직업훈련실2 (손기능작업훈련실)		책상 4개, 의자 8개	손작업기능 훈련실로 활용, 기타 실습실 등으로 활용 가능
3	직업훈련실3 (정보교육실)		컴퓨터 8대, 의자 및 책상 8개	컴퓨터 교육이나 인터넷 활용 수업 가능
4	직업훈련실4 (공예실)		책상 8개, 의자 10개	공예 및 기타 실습실로 활용
5	직업훈련실5 (직무체험실)		바닥 매트	대근육 활동이나 린넨체험실 등으로 활용
6	카페테리아 꿈터		원형 책상 4개, 의자 12개, 커피머신	바리스타 교육 및 기타 외식서비스 교육실 등으로 활용 가능

2. 특수교사 연수 지원

목 적

-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로·직업 교육 관련 연수를 통하여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
-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8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1. 관내 특수교사 역량강화연수

목 적

- 특수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책무성 강화
- 각 학교·급 특수교사 간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한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교수·학습 지도 능력 배양

1) 운영방침

- 가) 특수교사 연수 개설 관련 수요조사
- 나) 특수교사의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
- 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연수 내용을 선정하여 추진
- 라) 연수 종료 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운영 점검 실시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22. 5 ~ 2022. 11.
- 나) 장소 : 군산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 라) 내용 : 진로직업관련 연수

2-2. 권역 특수교사 진로직업역량 강화 연수

목 적

- 특수교사의 진로·직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 권역(김제, 부안, 고창, 정읍)지역 특수교사들 간 소통의 장 제공

1) 운영방침

- 가) 권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일정을 조율하여 프로그램 운영
- 나) 지속적으로 강사 및 프로그램 관리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
- 다)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및 협의회 실시
- 라) 연수 종료 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운영 점검 실시

2) 세부운영계획(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 기간 : 2022. 7. ~ 10.(연중 2회)
- 나) 장소 : 권역 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권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 라) 내용 : 권역 특수교사 진로·직업역량강화연수 및 컨설팅 등을 실시

3. 학부모 연수 지원

목 적

- 학부모간 친목 및 정보교류 활성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자녀의 진로 및 취업교육에 필요한 기초 소양의 지속적 함양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설계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고 취업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 가)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 나) 진로 및 취업정보 관련 학부모 상담 실시
- 다) 다양한 교육 제공을 통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공단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공감대 형성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22. 5. ~ 2022. 10. 중 운영
- 나) 장소 : 군산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
- 라) 내용 : 진로직업관련 연수

3-1. 학부모 진로진학 설명회

목 적

-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지원
-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간 소통 및 정보교류 활성화
- 특수교육대상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진로 및 진학 정보 제공

1) 운영방침

- 가) 진로 및 취업정보 관련 학부모 상담 실시
- 나)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 다) 신청 접수 이후 일정을 조정하여 통보
- 라)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운영 점검 실시
- 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공단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공감대 형성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22년 9월중
- 나) 장소 : 군산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
- 다) 대상 :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 라) 내용 : 장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대학교 수시 입학전형 안내

Ⅲ

월별 업무추진 계획

사업명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진로상담 및 평가				■									
자격증 과정				■									
취업준비프로그램 및 사업체 현장 실습				■									
순회교육				■									
중학교 컴퓨터교육										■			
취업지원 및 추수지도				■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										
특수학급 차량 운행 지원				■						■			
센터 시설 대여				■									
찾아가는 직업 교육				■									
교사 연수					■								
학부모 연수										■			

